

인천광역시 중구

구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



선 결	기 관 의 장

제 115 호

2005년 2월 21일 월요일

차 례

고 시

- 인천광역시중구고시제2005-46호(인천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실시계획인가고시) 3

공 고

- 인천광역시중구공고제2005-590호(도시계획시설사업개설공사공시송달공고) 14
- 인천광역시중구공고제2005-591호(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체납지자동차압류예고공고) 15
- 인천광역시중구공고제2005-592호(유기동물보호공고) 19
- 인천광역시중구공고제2005-593호(인천광역시중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및시행규칙안입법예고공고) 21
- 인천광역시중구공고제2005-594호(인천광역시중구재난상황실운영규정안입법예고공고) 30
- 인천광역시중구공고제2005-595호(담배소매업 폐업에따른지정신청공고) 36
- 인천광역시중구공고제2005-596호(인천광역시중구비전임계약직공무원채용시험시행계획공고) 37
- 인천광역시중구공고제2005-597호(교통서포터즈채용시험시행계획공고) 39
- 인천광역시중구공고제2005-600호(인천광역시중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안입법예고공고) 41
- 인천광역시중구공고제2005-601호(인천광역시중구지역보건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입법예고공고) 47
- 인천광역시중구공고제2005-602호(인천광역시중구공동주택지원조례안입법예고공고) 56

회 람								
--------	--	--	--	--	--	--	--	--

발행 : 인천광역시 중구 편집 : 문화공보실

- 인천광역시중구공고제2005-603호(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체납자자동차압류예고공고) 60
- 인천광역시중구공고제2005-604호(인천광역시중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입법예고
공고) 64
- 인천광역시중구공고제2005-606호(신포시장환경개선공사공시송달공고) 69
- 인천광역시중구공고제2005-607호(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체납자자동차압류예고공고) 73

인천광역시중구고시 제2005-46호

인천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실시계획인가 고시

인천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사업명:신포시장 환경개선공사)사업을 시행하고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1조, 제96조 및 동법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중구청 도시정비과(☎760-7504) 및 산업경제과(☎760-7364)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05년 2월 19일

인 천 광 역 시 중 구 청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동 3, 9번지 일원
2. 재고시 사유
 - 당초 실시계획인가 고시(인천광역시중구고시 제2005-44호, 2005.1.14)시 공보(시·구보) 게재 누락된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 세목 게재
3.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공공공지
 - 명 칭 : 신포시장 환경개선공사
4. 사업의규모 : A=751.6㎡
5.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인천광역시중구청장
 -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관동 1가 9번지
6.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2005.1 ~ 2005.12.30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과 같음.
8.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붙임과 같음.

인천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실시계획인가 고시 토 지 조 서(1)

공사명 : 신포시장 환경개선사업

일련 번호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동명	지번		공부	편입	잔여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중구 신포동	3-12	대	245.3	245.3	0	국(재무부)	국(재무부)				
2	"	3-23	대	9.6	9.6	0	인천중구청	관동1가 9				
3	"	3-24	대	8.3	8.3	0	"	"				
4	"	3-25	대	8.3	8.3	0	"	"				
5	"	3-26	대	4.3	4.3	0	"	"				
6	"	3-27	대	4.3	4.3	0	"	"				
7	"	3-28	대	2.3	2.3	0	"	"				
8	"	3-29	대	2.3	2.3	0	"	"				
9	"	3-30	대	4.6	4.6	0	"	"				
10	"	3-31	대	4.0	4.0	0	"	"				
11	"	3-32	대	2.3	2.3	0	"	"				
12	"	3-33	대	2.6	2.6	0	"	"				
13	"	3-34	대	6.0	6.0	0	"	"				
14	"	3-35	대	4.3	4.3	0	"	"				
15	"	3-36	대	4.3	4.3	0	"	"				
소 계				312.8	312.8	0						

토 지 조 서(2)

공사명 : 신포시장 환경개선사업

일련 번호	소재지		지목	면적(m ²)			소유자		관계인		비고
	동명	지번		공부	편입	잔여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6	중구 신포동	3-37	대	4.6	4.6	0	인천중구청	관동1가 9			
17	"	3-38	대	0.7	0.7	0	국(재무부)	국(재무부)			
18	"	3-39	대	6.0	6.0	0	인천중구청	관동1가 9			
19	"	5-9	대	86.0	86.0	0	좌정자외10	"	인천광역시 중구	관동1가 9 (압류)	
									송의3,4동 세마을금고	남구 송의동 51-21	
									신포시장 세마을금고	신포동 7	
									신포동 세마을금고	신포동 18-1	
20	"	5-17	대	29.1	13.0	16.1	김기욱외3	남동구 서창동	송의3,4동 세마을금고	남구 송의동 51-21	
									최연숙	신포동2가 50-10	
21	"	9-7	대	26.4	26.4	0	최효숙외12	운서동 2708-1	최은식	동구 송림동 105	
									(주)세화 상호신용금고	답동 3	
									(주)세화 상호신용금고	신생동 2-33	
									최병선	남구 도화동 456	
									(합)영진 상호신용금고	부천시 심곡동 176-13	
									(주)정우 상호신용금고	신포동 1	
소 계				152.8	136.7	16.1					

토 지 조 서(3)

공사명 : 신포시장 환경개선사업

일련 번호	소재지		지목	면적(m ²)			소유자		관계인		비고									
	동명	지번		공부	편입	잔여	성명	주소	성명	주소										
21	중구 신포동	9- 7	대				최효숙외12	운서동 2708-1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신포지점)										
									신포동 세마을금고	신포동 18-1										
									신포동 세마을금고	신포동 18-7										
									웅진농업 협동조합	유동 6-3										
									이명옥	남구 학익동 신포아A										
									김도환	남구 학익동 신포아A										
22	"	9- 8	대		22.1	22.1	최효숙외12	"	최연숙	신포동2가 50-10										
									최은식	동구 송림동 105										
									(주)세화 상호신용금고	답동 3										
									(주)세화 상호신용금고	신생동 2-33										
									최병선	남구 도화동 456										
									(합)영진 상호신용금고	부천시심곡동 176-13										
									(주)정우 상호신용금고	신포동 1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신포지점)										
									신포동 세마을금고	신포동 18-1										
									신포동 세마을금고	신포동 18-7										
									소 계				22.1	22.1	0					

토 지 조 서(4)

공사명 : 신포시장 환경개선사업

일련 번호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동명	지번		공부	편입	간여	성명	주소	성명	주소	
22	중구 신포동	9-8	대				최효숙외12	윤서동 2708-1	이명옥 김도완	유동 6-3 남구 학익동 신동아A 남구 학익동 신동아A	
23	"	9-11	대	23.1	23.1	0	최효숙외12	"	최연숙 최은식 (주)세화 상호신용금고 (주)세화 상호신용금고 최병선 (합)영진 상호신용금고 (주)경우 상호신용금고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신포동 새마을금고 신포동 새마을금고 농협협동조합 이명옥 김도완	신포동2가 50-10 동구 송림동 105 답동 3 신생동 2-33 남구 도화동 456 부천시심곡동 176-13 신포동 1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신포지점) 신포동 18-1 신포동 18-7 유동 6-3 남구 학익동 신동아A 남구 학익동 신동아A	
소 계				23.1	23.1	0					

토 지 조 서(5)

공사명 : 신포시장 환경개선사업

일련 번호	소재지		지목	면적(m ²)			소유자		관계인			비고
	동명	지번		공부	편입	간여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주소	
24	중구 신포동	9-12	대	23.1	23.1	0	최효숙외12	윤서동 2708-1	최연숙 최은식 (주)세화 상호신용금고 (주)세화 상호신용금고 최병선 (합)영진 상호신용금고 (주)정우 상호신용금고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신포동 새마을금고 신포동 새마을금고 웅진농업 협동조합 이명옥 김도완	신포동 1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신포지점) 신포동 18-1 신포동 18-7 유동 6-3 남구 학익동 신포아A 남구 학익동 신포아A	신포동 176-13	
25	"	9-13	대	29.8	29.8	0	최효숙외12	"	최연숙 최은식 (주)세화 상호신용금고 (주)세화 상호신용금고	신포동 2-33 남구 도화동 456 부천시심곡동 176-13 신포동 1 신포동 18-1 신포동 18-7 유동 6-3 남구 학익동 신포아A 남구 학익동 신포아A	신포동 2-33	
소 계				52.9	52.9	0						

토 지 조 서(6)

공사명 : 신포시장 환경개선사업

일련 번호	소재지		지목	면적(m ²)			소유자		관계인		비고
	동명	지번		공부	편입	잔여	성명	주소	성명	주소	
25	중구 신포동	9-13	대				최효숙외12	윤서동 2708-1	최병선	남구 도화동 456	
									(합)영진 상호신용금고	부천시심곡동 176-13	
									(주)정우	신포동 1	
									상호신용금고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신포지점)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신포동 18-1	
									신포동 새마을금고	신포동 18-7	
26	"	9-14	대		29.8	29.8	최효숙외12	"	최연숙	신포동2가 50-10	
									최은식	동구 송림동 105	
									(주)세화 상호신용금고	답동 3	
									(주)세화 상호신용금고	신생동 2-33	
									최병선	남구 도화동 456	
									(합)영진 상호신용금고	부천시심곡동 176-13	
(주)정우 상호신용금고	신포동 1										
소 계					29.8	29.8	0				

토 지 조 서(7)

공사명 : 신포시장 환경개선사업

일련 번호	소재지		지목	면적(m ²)			소유자		관계인		비고
	동명	지번		공부	편입	잔여	성명	주소	성명	주소	
26	중구 신포동	9-14	대				최효숙외12	운서동 2708-1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신포지점)	
									신포동 새마을금고	신포동 18-1	
									신포동 새마을금고	신포동 18-7	
									웅진농업 협동조합	유동 6-3	
									이명옥	남구 학익동 신동아A	
									김도환	남구 학익동 신동아A	
27	"	9-15	대		174.2	174.2	0	최효숙외12	최연숙	신흥동2가 50-10	
									최은식	동구 송림동 105	
									(주)세화 상호신용금고	답동 3	
									(주)세화 상호신용금고	신생동 2-33	
									최병선	남구 도화동 456	
									(합)영진 상호신용금고	부천시심곡동 176-13	
									(주)정우 상호신용금고	신포동 1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신포지점)	
									신포동 새마을금고	신포동 18-1	
									신포동 새마을금고	신포동 18-7	
소 계					174.2	174.2	0				

토 지 조 서(8)

공사명 : 신포시장 환경개선사업

일련 번호	소재지		지목	면적(m ²)			소유자		관계인			비고
	동명	지번		공부	편입	간여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주소	
27	중구 신포동	9-15	대				최효숙외12	운서동 2708-1	유진농업 협동조합	유동 6-3		
									이명욱	남구 학익동 신동아A		
									김도완	남구 학익동 신동아A		
총 계				767.7	751.6	16.1						

물 건 조 서

공사명 : 신포시장 환경개선사업

일련 번호	소 재 지		물건의 종류	구조	면적(m ²)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동 명	지번			계	편입	잔여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1	중구 신포동	3- 23	식당	목재 슬래트	24.2	24.2	0	인천중구청	관동1가 9			철거완료
2	"	3-26	점포	목재 슬래트	4.3	4.3	0	"	"			"
3	"	3-27	점포	목재 슬래트	4.3	4.3	0	"	"			"
4	"	3-28	점포	목재 슬래트	8.2	8.2	0	"	"			"
5	"	3-31	점포	목재 슬래트	7.0	7.0	0	"	"			"
6	"	3-34	식당	사시 스래트	18.6	18.6	0	"	"			"
7	"	3-37	창고	목재 스래트	18.2	18.2	0	"	"			"
8	"	5- 9	창고	목재 스래트	8.2	8.2	0	미상				"
9	"	5- 9	점포	목재 스래트	18.3	18.3	0	미상				"
10	"	5-17	점포	목재 스래트	12.6	12.6	0	김용인외1	남동구 구월4동 1308 (24/3)			"
11	"	3-22	창고	사시 슬래트	1식 (1.2)	1식 (1.2)	0	강정순	신포동 3-22			미철거
12	"	3-21	가스통 보관소	블록	1식 (0.6)	1식 (0.6)	0	안옥선	신포동 3-21			미철거
13	중구 신포동	9-15	식당	목재 슬래트	20.9	20.9	0	인천중구청	관동1가 9			철거완료
14	"	9-15	식당	목재 슬래트	6.4	6.4	0	"	"			"

물 권 조 서

공사명 : 신포시장 환경개선사업

일련 번호	소 재 지		물건의 종류	구조	면적(m ²)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동 명	지번			계	편임	잔여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15	"	9-15	조리대	목재 슬래트	1식 (1.2)	1식 (1.2)	0	"	"			"
16	"	9-15	좌판	블럭	1식 (6.1)	1식 (6.1)		"	"			"
17	"	9-15	좌판	블럭	1식 (2.8)	1식 (2.8)		"	"			"
18	"	9-34	옥외 보일러실	브릭 스래트	4.7	4.7	0	"	"			미철거
19	"	9-12	식당	벽돌 슬래트	39.1	39.1	0	"	"			철거완료
20	"	9-12	화장실	블럭	1식 (0.8)	1식 (0.8)	0	"	"			"
21	"	9-13	상가/주택	블록 슬라브	39.4	39.4	0	남종국	남구 승의동 170-42			미철거
22	"	9-10	상가/주택	블록 슬라브	10.1	10.1	0	남종국	남구 승의동 170-42			미철거
23	"	9-10		블록 슬래트	22.1	22.1	0	남종국	남구 승의동 170-42			미철거
24	"	9-11	식당	블록 슬래트	16.3	16.3	0	인천중구청	관동1가 9			철거완료
25	중구 신포동	9- 8	화재로 소실	블록 슬래트	18.0	18.0	0	인천중구청	관동1가 9			철거완료
26	"	9- 7	화재로 소실	블록 슬래트	18.6	18.6	0	인천중구청	관동1가 9			"

인천광역시중구공고 제2005-590호

도시계획시설사업개설공사공시송달 공고

인천광역시장이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영종도북측유수지-왕산해수욕장간도로개설공사 <3차>)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하여 재결서 정보를 소유자에게 송달하고자하였으나 소유자 등의 주소 . 거소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자에 대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시행령4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4조6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대상자는 재결서 정보를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사업의 명칭

- 도시계획시설사업(영종도북측유수지-왕산해수욕장간도로개설공사 <3차>)

2.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장

3. 공시송달대상자 :

성 명	주 소	비 고
정순배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중암리 66-37	

4.공시송달기간 : 2005. 2. 14 - 2005. 2. 28

5.재결서정보 및 수령장소 : 중구청건설과(032-760-7432)

2005년 2월 14일

인 천 광 역 시 중 구 청 장

인천광역시중구공고 제2005-591호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체납자 자동차 압류예고 공고

압류예고대상 : 25고1098외 51대
주 소 : 인천 중구 운남 15-1 외 51개소
압류예고기간 : 2005.2.14 ~ 2005.3.1
압류예고의 내역 : 별 첨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하여 부과한 과태료가 현재까지 납부하지 하여 자동차관리법 제84조(과태료)제6항 및 지방세법 제28조(체납처분)·국세징수법 제41조(채권의압류절차)의 규정에 따라 채권(자동차)을 압류 할 예정이오니, 압류예고 기간내에 체납액 전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채권(자동차) 압류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의처 : 인천광역시중구교통행정과 (☎ 032-760-7677)

2005년 2월 14일

인 천 광 역 시 중 구 청 장

인천광역시중구공고 제2005-591호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체납자 자동차 압류예고 공고

연 번	주민 등록번호	성 명	주 소	부과 번호	부과 일자	부과 금액	부과 대상	검사 만료일자
1	780712-2*****	심현정	인천 중구 운남동 15번지1호 12/1 한빛맨션 2동 102호	002566-00	2004-11-29	300,000	25 고1098	2004.05.09.
2	721130-2*****	김은주	인천 중구 향동7가 27번지107호 9/3 비취맨션 1동 505호	002567-00	2004-11-29	300,000	28 러5416	2004.05.13.
3	120111-0*****	공항 마트(주)	인천 중구 운서동 2772번지2호 1층	002568-00	2004-11-29	300,000	86 라1851	2004.05.09.
4	520513-1*****	최원근	인천 중구 운서동 1314번지 21통2반	002569-00	2004-11-29	300,000	인천1 로5975	2004.05.18.
5	390411-2*****	김재숙	인천 중구 운서동 937번지 21통3반	002570-00	2004-11-29	300,000	인천30 고8291	2004.05.14.
6	540716-1*****	김영섭	인천 중구 남북동 873번지 1호 5통2반	002571-00	2004-11-29	300,000	인천30 구5856	2004.05.03.
7	700207-1*****	박승현	인천 중구 향동7가 27번지107호 19/1 비취맨션 4동 218호	002572-00	2004-11-29	300,000	인천30 다5256	2004.05.14.
8	740326-1*****	장중열	인천 중구 무의동 35번지 11/1	002573-00	2004-11-29	300,000	인천30 마1183	2004.05.02.
9	790218-1*****	문원용	인천 중구 신흥동2가 1번지40호 6/4	002574-00	2004-11-29	300,000	인천30 마9289	2004.05.24.
10	650705-1*****	유재식	인천 중구 향동7가 91번지2호 6/6 연안아파트 9동 405호	002575-00	2004-11-29	300,000	인천31 거7809	2004.05.18.
11	580804-2*****	김복희	인천 중구 운서동 1548번지 22통 4반	002576-00	2004-11-29	300,000	인천31 머8054	2004.05.17.
12	690530-1*****	김영호	인천 중구 송월동3가 11번지138호 15/3 성일빌라 402호	002577-00	2004-11-29	300,000	인천31 무4062	2004.05.28.
13	600213-2*****	이경란	인천 중구 신흥동1가 1번지14호 4/3	002578-00	2004-11-29	300,000	인천31 무4513	2004.05.16.
14	620207-1*****	이진국	인천 중구 전동 14번지6호 18/6 전동빌리지 110동 101호	002579-00	2004-11-29	300,000	인천31 무7927	2004.05.12.
15	780115-2*****	이영실	인천 중구 향동7가 91번지2호 5/1 연안아파트 4동 406호	002580-00	2004-11-29	300,000	인천32 라4076	2004.05.21.
16	810506-1*****	곽해남	인천 중구 송월동1가 12번지64호 12/1	002581-00	2004-11-29	300,000	인천32 라7870	2004.05.10.
17	660813-2*****	김명례	인천 중구 운서동 953번지 6호 108호 18통 1반	002582-00	2004-11-29	300,000	인천32 러4672	2004.05.07.
18	610801-1*****	김홍식	인천 중구 신흥동1가 43번지10호 12/4	002583-00	2004-11-29	300,000	인천32 러5310	2004.05.25.
19	680609-1*****	권만선	인천 중구 율목동 246번지8호 11/1 국동빌라 403호	002584-00	2004-11-29	300,000	인천32 마2980	2004.05.18.
20	561101-1*****	신영승	인천 중구 북성동2가 12번지37호 6/2	002585-00	2004-11-29	300,000	인천32 마5129	2004.05.31.

연번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소	부과번호	부과일자	부과금액	부과대상	검사 만료일자
21	690823-2*****	신정순	인천 중구 용동 25번지 10/2	002586-00	2004-11-29	300,000	인천33 더1806	2004. 05.14.
22	710228-2*****	허미화	인천 중구 선화동 31번지11호 18/4	002587-00	2004-11-29	300,000	인천33 도4587	2004. 05.08.
23	640411-1*****	윤기화	인천 중구 을목동 110번지113호 7/3 바우빌라 102호	002588-00	2004-11-29	300,000	인천35 가3345	2004. 05.23.
24	710207-2*****	이정순	인천 중구 신흥동3가 7-235 36/5 신흥아이파크 109/1713	002590-00	2004-11-29	300,000	인천3 교1579	2004. 05.07.
25	820601-2*****	백미혜	인천 중구 향동7가 91-2 8/5 연안아파트 15동 206호	002591-00	2004-11-29	300,000	인천3 도5930	2004. 05.07.
26	590706-1*****	김근수	인천 중구 운서동 1230번지1호 21/3	002592-00	2004-11-29	300,000	인천4 거2926	2004. 05.02.
27	580116-1*****	안승찬	인천 중구 용동 18번지 10/1	002593-00	2004-11-29	300,000	인천60 나1145	2004. 05.24.
28	620310-1*****	진태울	인천 중구 답동 46번지3호 12/3	002594-00	2004-11-29	300,000	인천70 너3695	2004. 05.12.
29	120111-0*****	(주)대우 강업	인천 중구 신흥동3가 41번지	002595-00	2004-11-29	300,000	인천7 가4562	2004. 05.11.
30	520201-1*****	김유원	인천 중구 북성동1가 98번지2호 13/1	002596-00	2004-11-29	300,000	인천7 로3050	2004. 05.15.
31	580713-1*****	김영환	인천 중구 증산동 1329번지 3/6	002598-00	2004-11-29	300,000	인천80 다5754	2004. 05.13.
32	120111-0*****	거룩산업 개발(주)	인천 중구 향동7가 27번지230호	002599-00	2004-11-29	300,000	인천80 다6383	2004. 05.06.
33	760305-1*****	백종근	인천 중구 운서동 2793-2 50/2 영종해수사우나 601호	002600-00	2004-11-29	300,000	인천80 더3011	2004. 05.23.
34	120111-0*****	(주)두경 종합유통	인천 중구 유동 42번지3호	002601-00	2004-11-29	300,000	인천80 라2756	2004. 05.03.
35	650228-1*****	곽진영	인천중구 북성동2가 6번지10호 10/6 삼형빌라 다/102	002602-00	2004-11-29	300,000	인천80 러4453	2004. 05.08.
36	641118-1*****	정종훈	인천 중구 관동3가 4번지1호 22/4 건흥아파트 504호	002603-00	2004-11-29	300,000	인천80 러6873	2004. 05.16.
37	120111-0*****	(주)인송	인천 중구 신흥동3가 32번지15호	002604-00	2004-11-29	300,000	인천80 자9419	2004. 05.05.
38	120111-0*****	성원안전 시스템(주)	인천 중구 신흥동2가 16번지22호	002605-00	2004-11-29	300,000	인천82 다1923	2004. 05.20.
39	470327-1*****	김만형	인천 중구 북성동1가 98번지194호 17/4	002606-00	2004-11-29	300,000	인천83 가6032	2004. 05.11.
40	690819-1*****	장영섭	인천 중구 무의동 121번지 10/2	002607-00	2004-11-29	300,000	인천86 가4587	2004. 05.13.
41	630901-1*****	김철수	인천 중구 향동7가 27-10718/4 비취맨손 10/1009	002608-00	2004-11-29	300,000	인천86 바3826	2004. 05.16.
42	120111-0*****	삼영 물류(주)	인천 중구 신흥동3가 7번지241호 정석빌딩 신관 8층	002609-00	2004-11-29	300,000	인천86 아3389	2004. 05.02.

연 번	주민 등록번호	성 명	주 소	부과번호	부과일자	부과금액	부과대상	검사 만료일자
43	124611-0*****	(주)세종 글로벌	인천 중구 신흥동3가 7번지241호 정석빌딩 신관601호	002610-00	2004-11-29	300,000	인천86 자5183	2004. 05.20.
44	120111-0*****	서해안 종합물류	인천중구 항동7가 27번지48호	002611-00	2004-11-29	300,000	인천86 자6625	2004. 05.29.
45	120111-0*****	서해안 종합물류	인천 중구 항동7가 27번지48호	002612-00	2004-11-29	300,000	인천86 자6650	2004. 05.03.
46	120111-0*****	서해안 종합물류	인천 중구 항동7가 27번지48호	002613-00	2004-11-29	300,000	인천86 자6652	2004. 05.07.
47	120111-0*****	서해안 종합물류	인천 중구 항동7가 27번지48호	002614-00	2004-11-29	300,000	인천86 자6658	2004. 05.13.
48	120111-0*****	서해안 종합물류	인천 중구 운남동 363번지3호	002615-00	2004-11-29	300,000	인천86 자6753	2004. 05.06.
49	131211-0*****	(주)금화 물류	인천 중구 항동7가 58번지79호 현대빌딩 501호	002616-00	2004-11-29	300,000	인천98 사6825	2004. 05.13.
50	131211-0*****	(주)금화 물류	인천 중구 항동7가 58번지79호 현대빌딩 501호	002617-00	2004-11-29	300,000	인천98 아4506	2004. 05.11.
51	120111-0*****	(주)진연	인천 중구 신흥동3가 31번지12호	002618-00	2004-11-29	120,000	인천98 자3015	2004. 05.03.
52	711003-2*****	구은경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2가 22-98 3/4 로얄빌라 2/402	002619-00	2004-11-29	300,000	인천7 도6578	2004. 02.22.

인천광역시중구공고 제2005-592호

유기동물보호공고

동물보호법 제7조 및 인천광역시유기동물보호에관한조례 제2조제2항에 유기된 동물에 대하여 보호조치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유기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공고 기간내 반환청구 하시기 바랍니다.

2005년 2월 14일

인천광역시중구청장

보호기간 : 2005.2.04~2005.3.03

유기동물 발생현황

관리번호	동물의 종류	품종	성별 (연령)	발견일시	발견장소 /보호소지정	비고 (특징)
2005-2-26	개	치와와 잡종	암 (3년)	'05.2.04	여객터미널 뒤 / 경동	-건강양호, 털색:노랑 -체장:35Cm,체고:18Cm -무게 : 4.5Kg
2005-2-27	개	코카스 파니엘	암 (18개월)	'05.2.07	중구청당직실 / 경동	-건강상태 양호,얼은갈색 -체장:40Cm,체고:28Cm -무게 : 8.5Kg
2005-2-28	개	요크셔 테리어	암 (2년)	'05.2.07	하인천슈퍼골목 / 경동	-상태 : 피부병 심함, 검정색 -체장:35Cm,체고:20Cm -무게 : 4.5Kg
2005-2-29	개	말티즈	수 (1년)	'05.2.08	동인천지하상가 / 경동	-건강양호, 흰색 -체장:25Cm,체고:18Cm -무게 : 3Kg
2005-2-30	개	코카스 파니엘	암 (2년)	'05.2.08	영마루공원 / 신공항	-건강양호, 갈색 -체장:40Cm, 체고:35Cm -무게 : 8Kg
2005-2-31	개	코카스 파니엘	암 (3년)	'05.2.11	공항주유소 옆 / 신공항	-피부병심함, 갈색 -체장:45Cm,체고:35Cm -무게 : 11Kg
2005-2-32	개	쉬츠	수 (1년)	'05.2.11	시드니모텔 앞 / 경동	-건강양호, 흰색+ 노랑 -체장:35Cm,체고:20Cm -무게 : 7Kg

관리번호	동물의 종류	품종	성별 (연령)	발견일시	발견장소 /보호소지정	비고 (특징)
2005-2-33	개	도사견 잡종	수 (1년)	'05.2.12	용진수협포구앞 / 경동	-건강양호, 노란색 -체장:100Cm,체고:35Cm -무게 : 30Kg
2005-2-34	고양이	잡종 (야생)	수 (1년)	'05.2.14	송월동동사무소 / 경동	-야생들고양이로 사료됨 -체장:25Cm,체고:12Cm -무게 : 3.5Kg

- 보호시설 현황 : 중구 경동 239번지(경동동물병원). 관리자 이광태
중구 운서동 2789번지(신공항동물병원). 관리자 안재훈

유의사항

- 반환시 동물보호법 제7조제5항 규정에 의거 보호기간 동안 동물의 포획 및 관리에 소요된 경비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 반환청구 기간이 경과하여도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나타나지 아니하거나 알 수 없을 경우 유실물법 제12조 및 민법 제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소유권은 동물보호법 제7조제3항, 제4항 규정에 의거 중구에 귀속되며 귀속된 동물은 동물애호가에 기증하거나 도태처리(안락사)됩니다.
- 유기동물을 분양 받고자 하는 동물애호가는 3.03일까지 경동동물병원(765-9988), 신공항동물병원(751-4598) 구청 산업경제과(032)760-737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중구공고 제2005-593호

인천광역시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안 및 시행규칙안 입법예고공고

인천광역시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및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이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의 내용을 인천광역시중구법제사무처리규칙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2월 14일

인 천 광 역 시 중 구 청 장

1. 조 례 명 : 인천광역시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및 시행규칙

2. 취 지

-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기금규모의 확대를 통한 능동적인 예방 추진을 위하여 종전의 재난관리법 상의 재난관리기금과 자연재해대책법상의 재해대책기금을 통합하여 재난관리기금으로 일원화하여 기금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인천광역시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68조제2항, 영 74조제1항 및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시행규칙 제20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
 - 인명구조장비 등 안전장비 확보
 -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 재난관련 장비 구입 등
-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용자 등)
 - 구청장은 영 제7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 법 제40조 내지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용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용자한도액은 2천만원이하로 하되 용자기금 규모와 용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 인천광역시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안 : “별첨”

【인천광역시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시행규칙】

○ 제5조(용자의 조건 등) 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호의 조건으로 용자할 수 있다.

- 용자기간은 2년거치 5년 균등상환. 단,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부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용자이율은 연리 4%로 하되 변동금리로 하고 거치 기간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용자 받은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 기간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구 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제6조(용자금의 상환)

- 구청장은 채무자가 제6조제3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인천광역시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시행규칙안 : “별첨”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5년 3월 5일까지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참조 : 건설과)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연락전화번호 : (032)760-7466]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5. 공청회 개최계획 없음

인천광역시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05. .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 제안사유

-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및 종전의 「재난관리법」 제56조에 의해 각자 운영되어온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이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의 시행(2004.06.01)으로 “재난관리기금”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인천광역시중구 재난관리기금의 조성방법을 규정함.(안 제2조)
-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30 이상의 금액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관리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는 당해 연도 사용 가능하도록 함(안 제3조 내지 제5조)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제7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0조에서 정한 기금의 사용·용도외에 추가로 규정함(안 제6조)
- 기금의 회계관리와 회계공무원(기금운용관 : 도시국장, 기금출납원 : 재난업무담당주사)을 지정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안 제8조)
-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재난과 관련이 있는 실·과장으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 심의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내지 제11조)
-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는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인천광역시중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함(안 제13조)

□ 참고사항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재난관리기금의 적립) 및 제68조(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등)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제74조(재난관리기금의 용도) 및 제75조(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리)

인천광역시중구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입
3. 기타 잡수입 등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의 금액(이하 “장기예치기금액”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당해연도사용기금액”이라 한다)는 당해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장기예치기금액의 예치·관리) 장기예치기금액은 인천광역시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정금고(지방재정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이라 함은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35조 및 「은행법」 제5조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제5조(당해연도사용기금액의 운용·관리) ①당해연도사용기금액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구 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②당해연도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68조제2항, 영 제74조제1항 및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규칙」 제20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호의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
2. 인명구조장비 등 안전장비 확보
3.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4. 재난관련 장비 구입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용자 등) ①구청장은 영 제7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② 법 제40조 내지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용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용자한도액은 2천만원이하로 하되 용자기금 규모와 용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 그밖에 기금의 용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제8조(회계공무원) ①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도시국장
2. 기금출납원 : 재난업무담당주사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기금의 회계관리)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인천광역시중구재무 회계규칙」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하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국장이 된다.

④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중구 소속 실·과장으로 구성하며 이 경우 재난과 관련이 있는 실·과장은 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과장, 보건복지과장, 산업경제과장, 건설과장, 건축과장, 도시정비과장, 관광개발과장, 교통행정과장이 된다.

⑤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재난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11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
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연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기금의 조성계획
- 2. 기금의 사용계획
- 3. 기금의 운용방법
- 4. 기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인천광역시중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인천광역시중구재해·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제3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인천광역시중구재해·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인천광역시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05. .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 제안사유

-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및 종전의 「재난관리법」 제56조에 의해 각자 운영되어온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이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의 시행(2004.06.01)으로 “재난관리기금”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인천광역시중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인천광역시중구재난관리기금의 산출규정을 규정함(안 제2조)
- 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음
 - 융자기간은 2년거치 5년 균등상환
 - 융자이율은 연리 4%로 하되 변동금리로 하고 거치 기간중에는 무이자로 함(안 제5조 내지 제7조)
-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 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음(안 제8조)
-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부서가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 부서에 제출하여야 함(안 제9조)

□ 참고사항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재난관리기금의 적립) 및 제68조(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등)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제74조(재난관리기금의 용도) 및 제75조(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리)

인천광역시중구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법정적립액 산출은 인천광역시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①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①증식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당해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후 1월 이내에 증식용 기금 계좌에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용자의 조건 등) 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호의 조건으로 용자할 수 있다.

1. 용자기간은 2년거치 5년 균등상환. 단,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2. 용자이율은 연리 4%로 하되 변동금리로 하고 거치 기간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용자 받은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 기간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구 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용자금의 상환) ① 구청장은 채무자가 제6조제3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추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용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용자를 받았을 경우
2. 용자금을 용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3. 용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관계법령 및 용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상환하여야 한다.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 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하여 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용자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용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용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 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 구 금고로 하여금 용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①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부서가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보고서를 취합 총괄 정리하여 구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1호 서식)
2. 재난관리기금 현금출납부(별지 제2호 서식)
3. 적립금(정기적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
4. 적립금(정기예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 서식)
5. 적립금(사용기금) 관리대장(별지 제5호 서식)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 「인천광역시중구재해·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시행규칙」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규칙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제3조(폐지규칙)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인천광역시중구재해·재난관리기금운용 관리조례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인천광역시중구공고 제2005-594호

인천광역시중구재난상황실운영규정안 입법예고공고

인천광역시중구 재난상황실 운영규정을 제정함에 이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자 그 취지의 내용을 인천광역시중구법제사무처리규칙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2월 14일

인 천 광 역 시 중 구 청 장

1. 조 례 명 : 인천광역시중구 재난상황실 운영규정

2. 취 지

- 재난정보의 수집·전파, 신속한 지휘 및 상황관리를 위하여 상황실을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천광역시중구 재난상황실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제3조(재난상황실의 설치 및 임무) 자연재난 및 인적재난의 정보수집·전파, 신속한 지휘 및 상황관리를 위하여 재난상황실을 두고 상황실 근무자는 상황관리지원 및 상황관리분석, 재난정보관리 등의 임무를 수행
- 제6조(상황실 근무반 편성) 제3조의 임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상황실 근무반을 편성·운영
- 제8조(보고 및 전파 등) 재난상황실장은 각종 재난상황을 보고체계에 따라 지체 없이 보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유관기관·단체 등에 전파
- 제10조(기록유지) 상황실장은 일일 상황실근무일지 및 주요 재난수습 상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재난상황보고·전파체계도, 유관기관·단체·구·군 상황실 연락처, 상황실 근무수칙 등을 상황실에 비치하고, 효율적인 상황대처를 위하여 주요 재난에 대하여 실제 적용이 가능한 유형별·상황단계별 응용매뉴얼 및 행동매뉴얼을 작성하여 관리
- 제13조(근무기간 및 인사우대) 상황실 전담근무자의 근무기간은 1년 이상을 원칙으로 하며, 상황실 근무를 1년 이상 성실히 수행한 경우 인사상 우대할 수 있음

※ 인천광역시중구 재난상황실 운영규정안 : 별 첨

4. 의견제출

이 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5년 3월 5일까지 인천광역시중구청장(참조 : 건설과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전화번호 : (032) 760-7443]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5. 공청회 개최계획 없음

인천광역시중구 재난상황실 운영규정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05. .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 제안사유

- 재난정보의 수집·전파, 신속한 지휘 및 상황관리를 위하여 상황실을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천광역시중구 재난상황실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자연재난 및 인적재난의 정보수집·전파, 신속한 지휘 및 상황관리를 위하여 재난상황실을 두고 상황실 근무자는 상황관리지원 및 상황 관리분석, 재난정보 관리 등의 임무를 수행(안 제3조)
- 상황실은 연중무휴 상시 운영하고, 안 제3조의 임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상황실 근무반을 편성·운영(안 제5조 내지 제6조)
- 재난상황실장은 각종 재난상황을 보고체계에 따라 지체없이 보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유관기관·단체 등에 전파(안 제8조)
- 상황실장은 일일 상황실근무일지 및 주요 재난수습상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재난상황보고·전파체계도, 유관기관·단체·구·군 상황실 연락처, 상황실 근무수칙 등을 상황실에 비치하고, 효율적인 상황대처를 위하여 주요 재난에 대하여 실제 적용이 가능한 유형별·상황단계별 응용매뉴얼 및 행동매뉴얼을 작성하여 관리(안 제10조)
- 상황실 근무인력의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충원하여야 하고, 상황실 근무를 1년 이상 성실히 수행한 경우 인사상 우대할 수 있고, 상황실 근무자에 대하여는 시간외 수당 및 급식을 제공(안제12조 내지 제15조)

□ 참고사항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9조(종합상황실 등의 설치·운영)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제23조제1항(종합상황실 및 재난상황실의 설치·운영)

인천광역시중구훈령 제 호

인천광역시중구 재난상황실 운영규정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천광역시중구 재난상황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연재난”이라 함은 법 제3조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태풍·홍수·호우(豪雨)·폭풍·해일(海溢)·폭설·가뭄·지진·황사(黃紗)·적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인적재난”이라 함은 법 제3조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고로 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목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
 -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 나. 그 밖에 가목의 피해에 준하는 것으로서 인천광역시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피해

제2장 설치 및 임무

제3조(재난상황실의 설치 및 임무) ①자연재난 및 인적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 정보의 수집·전파, 신속한 지휘 및 상황관리를 위하여 재난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을 둔다.

②상황실 근무자는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상황관리지원을 위한 각목의 임무를 수행한다.
 - 가. 상황근무자 근무명령
 - 나. 상황실 물품·장비 및 문서관리, 보안 업무 등
 - 다. 상황실 예산 및 회계 등 일반행정업무
2. 상황관리분석을 위한 각목의 임무를 수행한다.
 - 가. 재난의 예측 및 분석·관리
 - 나. 재난피해 정보수집 및 분석·판단
 - 다. 상시 모니터링시스템 구축·운영
 - 라. 국내 언론에 보도된 재난정보의 수집·분석
 - 마. 「인천광역시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상황판단회의 자료 제공

3. 재난정보관리를 위한 각목의 임무를 수행한다.

가. 재난대책 종합상황관리 총괄·조정

나. 기상상황 등 재난진행상황 파악 및 전달·처리

다. 각종 재난정보 수집 및 분석

라.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등

제4조(지휘 및 복무감독) ①도시국장은 상황실을 지휘·감독한다.

②상황실 근무자에 대한 복무사항은 건설과장이 관장한다.

③상황실 근무자에 대하여는 행사 차출 등 기타 근무에서 제외한다.

제3장 상황실 운영

제5조(상황실 운영 등) 상황실은 연중무휴 상시 운영한다.

제6조(상황실 근무반 편성) ①제3조의 임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상황실 근무반(이하 “근무반”이라 한다)을 편성·운영한다.

②평일 주간의 상황실장은 재난업무부서담당주사, 상황반원은 재난업무부서의 직원으로 한다.

③평일 야간 및 공휴일의 상황실장은 당직반장이, 상황반원은 당직반원이 겸임한다.

④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무인원 및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연말연시의 비상근무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2. 재난이 발생하였거나 재난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구청장이 이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등 상황실의 추가인력이 필요한 경우

제7조(근무자의 복무) ①근무반은 주간에는 매일 09:00부터 당일18:00까지 근무하며, 야간에는 18:00부터 익일 09:00까지 근무한다.

②당일 근무반은 근무개시 30분전에 출근하여 근무반과 합동근무하면서 업무를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③상황실 근무자는 별표 1의 근무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근무자의 복무에 관한 사항 중 이 규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준용한다.

제4장 보고 및 전파

제8조(보고 및 전파 등) ①재난상황실장(이하 “상황실장”이라 한다)은 각종 재난상황을 제2항의 보고체계에 따라 지체없이 보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유관기관·단체 등에 전파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 재난상황에 대한 보고는 구청장에게는 담당국장이 직접 보고하고, 부구청장 및 담당국장에게는 상황실장이 보고한다.

제9조(보고의 종류 및 보고체계 등) ①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난상황보고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기보고 : 매일 1회 작성하는 “재난관리 종합상황” 보고
2. 수시보고 : 주요 재난상황에 대하여 최초보고,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로 구분하여 실시간 수시보고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는 자연재난 및 인적재난관리상황을 포함하여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작성하는 시기와 서식 및 내용은 상황실장이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③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는 제목·일시·장소·원인·피해상황·응급조치 등 수습상황과 향후 조치계획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5장 기록유지 및 협조

제10조(기록유지) ①상황실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상황실 근무일지를 매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상황실장은 주요 재난수습상황을 지속적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재난상황과 관련된 각종 문서·대장 등의 보존 및 관리는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에 따른다.

③상황실장은 재난상황보고·전파체계도, 유관기관·단체·구·군 상황실 연락처, 상황실 근무수칙 등을 상황실에 비치하고 주기적으로 정비·관리하여야 한다.

④상황실장은 효율적인 상황대처를 위하여 주요 재난에 대하여 실제 적용이 가능한 유형별·상황단계별 응용매뉴얼 및 행동매뉴얼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재난관리책임기관 등과의 협조) 상황실장은 효율적인 재난상황관리를 위하여 각급 재난관리책임기관과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재난관련 정보와 각종 재난상황에 대한 협조 및 보고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시로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제6장 인사 및 후생복지

제12조(결원보충) 상황실 근무인력의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상황실업무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충원하여야 한다.

제13조(근무기간 및 인사우대) 상황실 전담근무자의 근무기간은 1년 이상을 원칙으로 하며, 상황실 근무를 1년 이상 성실히 수행한 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부서 전보 등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및 급식제공) ①상황실 근무자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에 따라 시간외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상황실 근무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급식을 제공할 수 있다.

- 제15조(근무환경 조성) ①상황실장은 근무환경이 근무자가 상시 근무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항상 쾌적하게 조성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효율적인 상황관리를 위하여 상황실내의 각종 전산·통신장비 등이 항상 최신시설 수준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③상황실장은 상황실 근무자에 대하여 상황관리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다.
- ④상황실은 재난상황관리와 관련이 없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발령과 동시에 인천광역시중구재해 대책상황실운영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인천광역시중구공고 제2004-595호

담배소매업 폐업에 따른 지정 신청 공고

담배소매업 폐업된 지역에 대하여 담배사업법 제1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담배소매업 지정 신청 공고합니다.

가. 담배소매인 신규 신청 대상지역

(1) 인광역시 중구 인현동 1-1번지 , 북성동1가 3번지 1호

나. 신청대상 : 상기 대상지역내에서 점포를 운영하는자(운영 예정 포함)로서 담배소매인 지정을 희망하는 자

다. 제출서류 (1) 소매인 지정신청서 1부.

(2)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국가유공자,장애인 : 유공자 증명서류, 장애인수첩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라. 접수기간 : 2005 . 2. 14 2005. 2. 23.

마. 접 수 처 : 인천광역시 중구청 산업경제과

바. 우선순위 : (1)국가유공자,장애인, (2)일반인

※ (1)의 경우 중복우선지정 불가

※ 같은 순위 신청자가 2명 이상일 경우 추첨에 의하여 신청자 선정.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중구청 산업경제과(☎ 760-73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5년 2월 14일

인 천 광 역 시 중 구 청 장

인천광역시중구공고 제2005-596호

인천광역시 중구 비전임계약직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인천광역시 중구 비전임계약직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2월 15일

인 천 광 역 시 중 구 청 장

1. 채용 분야 및 선발예정 인원 : 주·정차 단속분야 비전임계약직공무원 마급 4명
2. 시험 방법
 - 1차시험 : 서류전형
 - 2차시험(최종) : 면접시험 (도로교통법 및 일반상식 등)
 -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3. 응시 자격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결격사유) 각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현장단속 업무수행이 가능한 신체건강한 45세이상~60세이하(1944.1.1~1960.12.31) 인자 중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
 - ①상시종업원 30인이상 기업체에서 10년이상 근무한 경력자
 - ②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7급 이상, 경찰관 경사 이상, 군인 상사 이상, 소방관 소방장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③교사(초등학교 이상)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④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에서 팀장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⑤종업원 5인 이상의 사업을 5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
 - 2005. 1. 1. 전일부터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본적이 인천광역시 중구로 되어 있는자로 동기간중 주민등록 말소 사실이 없어야 함.
4. 채용 기간 : 계약일로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근무실적에 따라 2년 범위 내 연장가능)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2005. 2. 28(월) ~ 3. 4(금) [4일 간]
 - ※ 2005. 3. 1(화) 삼일절은 제외
 - 원서교부 및 접수장소 : 인천광역시 중구 교통행정과 (공무원 근무시간 내에 한 함)

6. 시험 일시

- 1차 시험 (서류전형) : 2005. 3. 7(월) ~ 11(금)
- 2차 시험 (면접시험) : 2005. 3. 22(화)

7. 합격자 발표

- 1차 시험 (서류 전형) : 2005. 3. 15(화)
- ※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장소는 인천광역시 중구 홈페이지에 게재
- 2차 시험 (면접 시험) : 2005. 3. 29(화)
- ※ 최종 합격자는 개별통지 및 인천광역시 중구 홈페이지에 게재

8. 제출 서류 (응시원서 접수 시 지참 및 제출)

- 응시원서1통 (소정 양식)
- 자기소개서, 경력증명서 (소정양식 및 증빙자료 첨부) 각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사진 2매 (반명함판 3.5cm × 4.5cm) : 응시원서에 부착
- 수수료 : 5,000원 상당의 인천광역시 중구 수입증지

9. 기타 사항

- 보수 수준은 동일자격 기준의 전임 계약직공무원의 연봉 한계액의 5할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이며, 별도의 수당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원서 접수는 직접 방문하셔야 하며, 원서 교부 및 접수 창구가 협소하여 혼잡이 예상되므로 인천광역시 중구 홈페이지에서 첨부 화일 (응시 원서 및 기타 제출서류 소정 서식)을 출력하여 미리 작성하신 후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우편 및 단체접수 불가)
- 채용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도 근무실적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 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합니다.
- 응시자는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 불능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자는 면접시험 1시간 전까지 주민등록증, 응시표를 지참하시고 지정된 장소에 입장하여 시험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 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중구 교통행정과 【 ☎(032)760-7562】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중구공고 제2005-597호

교통서포터즈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인천광역시 중구 교통서포터즈 (주·정차 단속분야)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2월 15일

인 천 광 역 시 중 구 청 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 인원 : 주·정차 단속분야 교통서포터즈 10명
2. 시험 방법
 - 1차시험 : 서류전형
 - 2차시험(최종) : 면접시험 (단속대장 등 작성, 기타 상식)
 -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3. 응시 자격
 - 현장 단속업무수행이 가능한 신체건강한 25세이상~45세미만(1961.1.1~1980.12.31)인 자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① 중졸이상 학력이나 운전면허증 2종 보통이상 소지자
 - ② 과거 주차단속 등 유사업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 ③ 기타 위 ①~②호의 상당하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2005. 1. 1. 전일부터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본적이 인천광역시 중구로 되어 있는자로 동기간중 주민등록 말소 사실이 없어야 함.
4. 채용 기간 : 계약 일로 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2005. 2. 28 (월) ~ 3. 4 (금) [4일 간]
 - 원서교부 및 접수장소
 - 인천광역시 중구 교통행정과내 (공무원 근무시간에 한 함)
6. 시험 일시
 - 1차 시험 (서류전형) : 2005. 3. 7 (월) ~ 11 (금)
 - 2차 시험 (면접시험) : 2005. 3. 22 (화)
7. 합격자 발표
 - 1차 시험 (서류전형) : 2005. 3. 15 (화)
 - ※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장소는 인천광역시 중구 홈페이지에 게재
 - 2차 시험 (면접시험) : 2005. 3. 29(화)
 - ※ 최종합격자는 개별통지 및 인천광역시 중구홈페이지에 게재

8. 제출 서류 (응시원서 접수 시 지참 및 제출)

- 응시원서1통 (소정양식)
- 주민등록등본 (소재지 확인, 가족사항 확인 등), 졸업증 및 운전면허증 사본, 기타증빙 자료
- 사진 2매 (반명함판 3.5cm × 4.5cm) : 응시원서에 부착

9. 기타 사항

- 보수 수준은 월평균 673,000원 (일당 45,000원, 중식비 5,000원, 교통비 23,400원)으로 1일 7시간 근무 (격일제, 월평균 13일 근무)
- 근무 형태는 1일 2교대로 노선별·구역별 책임단속 근무 (현장)
- 원서 교부는 인천광역시 중구 교통행정과에서 직접 교부 받거나 인천광역시 중구홈페이지에서 첨부 화일 (응시 원서)을 출력하여 작성하신 후, 접수는 인천광역시 중구청에 직접 접수하여야 합니다.(우편 및 단체접수 불가)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합니다.
- 응시자는 응시원서나 각종 증빙자료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으로 발생한 불 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자는 면접시험 1시간 전까지 주민등록증, 응시표를 지참하시고 지정된 장소에 입장하여 시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 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중구 교통행정과 (☎ (032)760-756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서포터즈는 현장 단속업무 수행자로서 업무의 곤란성, 책임성과 대민마찰, 민원 대응의 어려움 등을 고려, 2004년도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산정

- 52,374원(시중노임단가) × 7/8시간 = 45,000원(천원 단위미만 절사)

※ 월 평균 지급액 : 673,000원

- 일당 월 585,000원(45,000원×13일) + 중식비 65,000원(5,000원×13일) + 교통비(1,800원×13일)

인천광역시중구공고 제2005-600호

인천광역시중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 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안 입법예고공고

인천광역시중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개정함에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의 내용을 인천광역시중구법제사무처리규칙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1월 15일

인 천 광 역 시 중 구 청 장

1. 조례명 : 인천광역시중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이 개정(보건복지부령 제290호, 2004. 7.29)됨에 따라 성인인 증장치가 부착되지 아니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를 위하여
 - 인천광역시중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과태료부과 대상 및 기준 중 위반 내용 추가 (안 제2조)
 - [별표1]과태료의 부과기준Ⅱ개별기준 위반내용 중 제3호(성인 인증장치가 부착되지 아니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를 신설하여 위반횟수에 따라 최고 200만원까지 부과(안 별표1)
4.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2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중구청장(참조: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지역보건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의견제출 및 전화번호

 - ▲ 주소 : (우400-102)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2가 23번지
인천광역시중구보건소 지역보건팀
 - ▲ 전화 : 760-7666(fax 760-7689)
5. 공청회 개최계획 : 없음

인천광역시중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호
----------	-----

제출년월일 : 2005. . .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중구청장

1. 제안이유

-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이 개정(보건복지부령 제290호, 2004.7.29)됨에 따라 성인 인 증장치(가)가 부착되지 아니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에 대한 과태 료 부과·징수를 위하여
- 인천광역시중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정하 고자 함.

2. 주요골자

-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과태료부과 대상 및 기준 중 위반 내용 추가 (안 제2조)
- [별표1] 과태료 부과기준의 개별기준 위반내용 중 제3호(성인인증 장치가 부착되지 아니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를 신설함(안 별표1)

3. 관련법규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3항
-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제2항
-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5조의2

인천광역시중구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중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중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제2호 다음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3호 내지 제4호를 제4호 내지 제5호로 한다.

3. 법 제9조 제3항 규정에 위반하여 성인인증장치가 부착되지 아니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1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조 관련)

○ 일반기준

- 가. 일반행위가 2이상일 때에는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동일한 위반행위로 과태료처분을 받은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 다. 영업의 양도 상속 또는 법인합병전의 처분은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 후 법인이 승계한다.

○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위 반 내 용	근 거	과 태 료		
		1차	2차	3차
1. 법제9조제2항규정에 위반하여 담배자동판매기 설치장소가 아닌 장소에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	법제34조 제1항제1호	30	100	300
2. 법제9조제4항 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당해 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 지정하지 아니한 자	법제34조 제1항제2호	30	100	300
3. 법 제9조제3항 규정에 위반하여 성인인증장치가 부착되지 아니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	법제34조 제2항제1호	30	100	200
4. 법제9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흡연구역의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법제34조 제2항제2호	30	100	200
5. 법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와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법제34조 제2항제3호	30	100	200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p>제2조(부과대상) 과태료 부과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p> <p>1. < 생략 > 2. < 생략 > 3. 법 제9조 제4항 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흡연구역의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자 4.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와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p>		<p>제2조(부과대상) 과태료 ----- -----</p> <p>1. < 현행과 같음 > 2. < 현행과 같음 > 3. 법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성인인증장치가 부착되지 아니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 4. <현행 제3호와 같음> 5. <현행 제4호와 같음></p>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 1]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조 관련) ○ 개별기준 (단위 : 만원)					[별표 1]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조 관련) ○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위 반 내 용	근 거	1차	2차	3차	위 반 내 용	근 거	1차	2차	3차
1. 법제9조제2항 규정에 위반하여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장소가 아닌 장소에 담배 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	법제34조 제1항 제1호	30	100	300	1. < 현행과 같음 >				
2. 법제9조제4항 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전체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당해 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 지정하지 아니한 자	법제34조 제1항 제2호	30	100	300	2. < 현행과 같음 >				
신설					3. 법제9조제3항 규정에 위반하여 성인 인증장치가 부착되지 아니한 담배자동 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	법제34조 제2항 제1호	30	100	200
3. 법제9조제4항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흡연구역의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법제34조 제2항 제1호	30	100	200	4. 법제9조제4항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흡연구역의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법제34조 제2항 제2호	30	100	200
4. 법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와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법제34조 제2항 제2호	30	100	200	5. 법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와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법제34조 제3호	30	100	200

인천광역시중구공고 제2005-601호

인천광역시중구지역보건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 부과징수조례안 입법예고공고

인천광역시중구지역보건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제정함에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의 내용을 인천광역시중구법제사무처리규칙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2월 16일

인 천 광 역 시 중 구 청 장

1. 조례명 : 인천광역시중구지역보건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2. 취 지
 - 지역보건법 제2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의료기관이 아닌 자와 의료기관이 의료기관외의 장소에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하거나
 -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라는 유사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과태료 부과 징수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 과태료 부과 대상자를 규정함(안 제2조)
 - 과태료금액을 위반행위의 동기·정도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부과기준을 정하도록 규정함(안 제3조)
 -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서면·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 과태료부과 대상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 과태료금액,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명시하여 과태료 부과징수결정통지서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이의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
 -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기한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독촉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조)
 -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기록·관리하도록 규정함(안 제9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3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중구청장(참조: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지역보건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의견제출 및 전화번호

- ▲ 주소 : (우400-102)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2가 23번지
인천광역시중구보건소 지역보건팀
- ▲ 전화 : 760-7666(fax 760-7689)

5. 공청회 개최계획 : 없음

인천광역시중구 지역보건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의안 번호	제 호
----------	-----

제출년월일 : 2005. . .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중구청장

1. 제안이유

- 지역보건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의거 의료기관이 아닌 자와 의료기관이 의료기관외의 장소에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하거나,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라는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과태료부과·징수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 과태료부과 대상자를 규정함(안 제 2조)
- 과태료금액을 위반행위의 동기·정도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부과기준을 정하도록 규정함(안 제3조)
-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서면·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 과태료부과 대상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 과태료금액,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명시하여 과태료 부과징수결정 통지서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이의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
-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기한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독촉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조)
-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기록·관리하도록 규정함(안 제9조)

3. 관련법규

- 지역보건법 제18조, 제21조, 제26조

인천광역시중구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중구 지역보건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천광역시중구지역보건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이하 “과태료”라 한다) 부과·징수 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과대상자) 과태료부과 대상자는 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제3조(과태료부과 기준) 인천광역시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과태료금액을 정할 때에는 별표1의 기준에 의한다.

제4조(의견제출) 구청장은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에 의거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서면·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5조(과태료처분 통지) ① 구청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부과대상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위반사실, 과태료금액, 이의방법, 이의기간 등을 명시하여 과태료부과징수결정통지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납부고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15일이내로 한다. 이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7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발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과태료 부과 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이의신청)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구청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강제징수) 구청장은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5조 2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8조(과태료의 귀속) 수납되는 과태료는 인천광역시중구의 수입으로 한다.

제9조(과태료수납부 비치·관리)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준용규정) 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1 】

과태료부과기준(제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이상일 때에는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동일한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다. 영업의 양도, 상속 또는 법인합병전의 처분은 양도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법인이 승계한다.

2. 개별기준

위 반 내 용	관련법규	처 분 기 준		
		1차	2차	3차
1. 지역보건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한 자	법 제18조 및 제26조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2. 지역보건법 제21조 규정에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법 제21조 및 제26조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별지 제1호서식)

처 분 사 전 통 지 서

문서번호 :

시 행 일 :

수 신 :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예정된 처분의 제목							
2.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3.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4.처분하고자하는 내용							
5.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6.의 견 제 출	기 관 명		부서명		담당자		
	주 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모사전송		
	기 한	년 월 일			시까지		

인 천 광 역 시 중 구 청 장

(별지 제2호서식)

의견제출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 당사자	성명 (명칭)	
	주소	
3. 의견		
4.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

성명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중구청장 귀하

비고	<p>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p> <p>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p> <p>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p>
----	---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서면·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인천광역시 중구보건소 지역 보건팀 전화 760-766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중구공고 제2005-602호

인천광역시중구공동주택지원조례안 입법예고공고

인천광역시중구공동주택지원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이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의 내용을 인천광역시중구법제사무처리규칙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2월 15일

인 천 광 역 시 중 구 청 장

1. 조례명 : 인천광역시중구공동주택지원조례

2. 취 지

- 최근 공동주택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관내 공동주택단지 내 공용으로 사용하는 노후·불량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보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정비하게 함으로써 안전사고예방 및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구역 안에서 주택법 규정에 의하여 사용 검사를 받은 공동주택단지에 대하여 적용한다(안 제2조)
- 예산지원 대상사업은 사용검사를 받은 후 2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단지의 노후·불량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한하며, 예산지원을 받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5년 이내에 중복신청을 할 수 없다.(안 제3조)
- 예산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당해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사업계획내용 및 재원조달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안 제4조)
- 예산지원 대상의 선정 및 지원금액의 결정 등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중구공동주택단지예산지원심의회』를 둔다.(안 제6조)

※ 인천광역시중구공동주택지원조례(안) - “별첨”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5년 3월 7일까지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참조 : 건축과 ☎760-7492)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5. 공청회 개최계획 없음

[별 첨]

인천광역시중구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지원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 제4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지원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정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공동주택의 예산지원

제2조(적용범위 등)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구역 안에서 주택법 규정에 의하여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단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단, 임대주택은 제외한다.

제3조(지원대상사업) ① 공동주택의 예산지원 대상사업은 사용검사를 받은 후 2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단지의 노후·불량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중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한한다.

1. 공동주택단지내 보안등 정비사업
2. 공동주택단지내 하수도 정비사업
3. 공동주택단지내 조정시설 및 어린이놀이터 정비사업
4. 공동주택단지내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정비사업(증, 개축은 제외한다)
5. 기타 위해방지 등 관리업무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예산지원 기준은 별표1과 같으며, 제1항에 의하여 예산지원을 받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5년 이내에 다시 중복신청 할 수 없다.

제4조(예산지원 신청 등) ① 예산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당해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별지1호서식의 공동주택 예산지원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목적과 내용
2. 재원조달계획
 - 사업비용의 산출내역 및 산출근거
 - 자기자본부담액 및 보조금 지원신청금액
3. 사업기간
4. 공사계획(작업공정표) 및 공사설계도서

② 구청장은 제3조제1항 각 호의 지원대상사업의 예산지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지원 신청기간, 예산지원 대상 및 범위 등을 구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신청내용에 대하여 현장조사 실시 및 관계법령 검토후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인천광역시중구공동주택예산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지원 여부 및 범위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지원 대상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당해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시행 절차 및 지원방법 등) ① 구청장으로부터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통보 받은 관리주체는 통보 받은 날부터 1월이내에 보수 등 공사에 착수(관계법령 등에 의한 허가인가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즉시 그 내용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리주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착수기간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착수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예산지원 결정을 취소하고 이를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월의 범위 안에서 그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착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그 연장의 사유와 이를 입증할 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보수 등 공사에 착수한 관리주체는 당해 공사를 성실히 수행하여 사업시행을 완료(관계법령 등에 의한 준공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이 완료된 경우 공사완료 근거 및 정산내역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예산지원금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의 예산지원금 지급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완료 여부 및 적정성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예산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사업비의 증가가 있는 경우에는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
2. 사업비의 감소가 있는 경우에는 실시사업비에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보조금의 지원 비율을 곱한 금액

제3장 공동주택 예산지원 심의위원회

제6조(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지원을 위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중구공동주택예산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로 하되,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위원 총수의 2분의1을 초과 할 수 없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건축·주택·건축설비·공동주택관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구의원
은 당해 직책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제출한
예산지원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당해 연도 공동주택 예산지원 신청 대상사업의 적정성 검토
2. 공동주택 예산지원 대상사업의 선정
3. 예산지원 우선순위 및 지원금액 결정
4. 기타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함에 있어 예산지원 금액은 당해 연도 확보된
예산의 범위안에서 결정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수당) 구청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
산범위안에서 인천광역시중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
급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과 간사를 보좌하기
위하여 서기1인을 두되 간사는 공동주택업무를 담당하는 6급 공무원으로 한다.

제11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예산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중구보조금관리조례 및 인천광역시중구재무회계규칙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중구공고 제2005-603호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체납자 자동차 압류예고 공고

압류예고대상 : 인천31더6865외 72대

주 소 : 인천 중구 율목동 231번지91호외 72개소

압류예고기간 : 2005.2.16 ~ 2005.3.3

압류예고의 내역 : 별 첨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하여 부과한 과태료가 현재까지 납부하지 하여 자동차관리법 제84조(과태료)제6항 및 지방세법 제28조(체납처분)-국세징수법 제41조(채권의압류절차)의 규정에 따라 채권(자동차)을 압류 할 예정이오니, 압류예고 기간내에 체납액 전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채권(자동차) 압류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의처 : 인천광역시중구교통행정과 (☎ 032-760-7677)

2005년 2월 16일

인 천 광 역 시 중 구 청 장

인천광역시중구공고 제 2005-603호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체납자 자동차 압류예고 공고

연번	부과번호	주민등록번호	납부자성명	부과일자	부과금액	부과대상	유효기간 만료일자	검사일자	주소
1	002620-00	750329-1*****	장세흠	2004-11-29	20,000	인천31더6865	20040804	20040901	인천 중구 율목동 231번지91호9/4 조흥빌라 3동 404호
2	002622-00	610721-1*****	김석만	2004-11-29	20,000	인천83다5584	20040830	20040901	인천 중구 송월동1가 4번지 276호 20/4 선영홈타운 2동 501호
3	002624-00	120111-0*****	(주)천도	2004-11-29	260,000	인천31머5134	20040520	20040901	인천 중구 향동7가 85번지 1호
4	002625-00	110111-0*****	(주)국보	2004-11-29	20,000	인천98바2494	20040817	20040901	인천 중구 향동7가 31번지4호
5	002626-00	120111-0*****	화산종합운수(주)	2004-11-29	20,000	인천98자5003	20040825	20040901	인천 중구 향동7가 49번지2호
6	002627-00	120111-0*****	삼부운수(주)	2004-11-29	20,000	인천80사9605	20040901	20040902	인천 중구 신흥동3가 29번지8호
7	002628-00	670103-2*****	유정옥	2004-11-29	170,000	51가1123	20040616	20040902	인천 중구 운서동 1580번지 2호 17통2반
8	002630-00	110111-0*****	대한통운(주)	2004-11-29	20,000	인천80아1661	20040831	20040902	인천 중구 향동3가 1번지
9	002632-00	120111-0*****	(주)명지종합목재	2004-11-29	20,000	인천83다5672	20040827	20040903	인천 중구 향동7가 30번지4호
10	002637-00	690113-1*****	최봉기 외1인	2004-11-29	20,000	인천72다6793	20040820	20040903	인천 중구 운서동 2753번지 11호 52/5
11	002638-00	120111-0*****	서해안 종합물류	2004-11-29	20,000	인천86자6667	20040809	20040904	인천 중구 향동7가 27번지48호
12	002639-00	120111-0*****	동남아 종합운수	2004-11-29	20,000	인천98바6127	20040813	20040904	인천 중구 향동7가 92번지
13	002640-00	570507-1*****	성낙영	2004-11-29	20,000	인천60가1843	20040901	20040904	인천 중구 신흥동2가 1번지6/3 삼정베스트빌 1동 202호
14	002643-00	461123-1*****	이강명	2004-11-29	300,000	인천33모3991	20030621	20040906	인천 중구 운북동 94번지25호23/2
15	002645-00	124611-0*****	(주)해성 물류	2004-11-29	160,000	인천98자2555	20040624	20040906	인천 중구 향동7가 58번지6호
16	002646-00	124611-0*****	(주)한솔 에너지	2004-11-29	20,000	인천86자2839	20040807	20040906	인천 중구 향동7가 113번지
17	002649-00	650525-1*****	배만길 외1인	2004-11-29	20,000	인천31무2653	20040819	20040907	인천 중구 운서동 2788번지6호 영중주공스카이빌10단지@1002/1005
18	002650-00	630129-1*****	황정하	2004-11-29	20,000	인천35마8593	20040827	20040907	인천 중구 운서동 2745번지2호 풍림아이원3-1-1단지@ 102/105
19	002651-00	680220-2*****	김경숙	2004-11-29	20,000	인천32다8581	20040906	20040907	인천 중구 운서동 2793번지2호50/2 영중해수사우나 706호
20	002652-00	120111-0*****	삼영 물류(주)	2004-11-29	20,000	인천86자1746	20040903	20040908	인천 중구 신흥동3가 7번지241호 정석빌딩 신관 8층
21	002653-00	110111-0*****	(주)국보	2004-11-29	30,000	인천80아1133	20040803	20040908	인천 중구 향동7가 31-4
22	002654-00	110111-0*****	(주)케이 씨티시	2004-11-29	20,000	인천98바4717	20040814	20040909	인천 중구 향동7가 36번지1호
23	002657-00	680915-1*****	김인철	2004-11-29	20,000	인천70거1878	20040809	20040909	인천 중구 북성동1가 98번지 397호 17/ 2

연번	부과 번호	주민등록 번호	납부자 성명	부과 일자	부과 금액	부과 대상	유효기간 만료일자	검사 일자	주 소
24	002659-00	120111-0*****	(주)세진로지스틱	2004-11-29	20,000	인천98아2507	20040816	20040909	인천 중구 항동7가 58번지146호 다흥오피스텔 비동 601호
25	002660-00	770216-1*****	강종대	2004-11-29	60,000	인천80고2424	20040726	20040909	인천 중구 운서동 2789번지2호 시에로빌오피스텔1008호 50통5반
26	002664-00	124611-0*****	중앙 실업(주)	2004-11-29	20,000	인천76가3033	20040826	20040910	인천 중구 인현동 1번지116호
27	002665-00	120111-0*****	삼영 물류(주)	2004-11-29	20,000	인천86아3322	20040817	20040910	인천 중구 신흥동3가 7번지241호 정석빌딩 신관 8층
28	002666-00	120111-0*****	(주)준승무역	2004-11-29	40,000	인천32고5865	20040804	20040911	인천 중구 신생동 32번지2호 남경오피스텔 401호
29	002667-00	124611-0*****	팔도 환경(주)	2004-11-29	20,000	인천86가6201	20040827	20040913	인천 중구 송월동1가 13번지
30	002668-00	110111-0*****	(주)한진	2004-11-29	60,000	인천80바6055	20040731	20040913	인천 중구 항동7가 34번지 1호
31	002670-00	110111-1*****	코세로 지스틱스	2004-11-29	20,000	인천86자8420	20040910	20040913	인천 중구 신흥동3가 18번지3호
32	002673-00	520610-2*****	최금자	2004-11-29	80,000	인천34로1523	20040726	20040914	인천 중구 도원동 70번지14호6/2 삼흥탑스빌라 201호
33	002675-00	120111-0*****	(주)한울로지스틱	2004-11-29	20,000	인천98사5201	20040907	20040914	인천 중구 항동7가 55번지
34	002678-00	120111-0*****	공성 운수(주)	2004-11-29	20,000	인천98바4854	20040909	20040914	인천 중구 신흥동3가 33번지6호
35	002681-00	120111-0*****	삼영 물류(주)	2004-11-29	20,000	인천86자1752	20040910	20040915	인천 중구 신흥동3가 7번지241호 정석빌딩 신관 8층
36	002682-00	124611-0*****	(주)정로	2004-11-29	20,000	인천70마2362	20040827	20040915	인천 중구 항동7가 58번지4호 라이프상가 2-210
37	002683-00	560223-1*****	김한신	2004-11-29	300,000	인천30다9485	20040515	20040915	인천 중구 송월동1가 4번지61호 신성빌리지 303호
38	002684-00	651220-1*****	이종원	2004-11-29	20,000	인천30더5743	20040819	20040915	인천 중구 신생동 33번지23호6/2 동민빌라트 702동 302호
39	002686-00	120111-0*****	(주)인천 델몬트	2004-11-29	20,000	인천7로2269	20040904	20040915	인천 중구 신흥동3가 13번지
40	002689-00	780718-2*****	김양선	2004-11-29	80,000	인천80거4650	20040728	20040915	인천 중구 중앙동3가 4번지21통4반
41	002692-00	120111-0*****	(주)태산 운수	2004-11-29	20,000	인천98자4256	20040910	20040916	인천 중구 항동7가 31번지4호 홍아빌딩내1층
42	002693-00	450120-1*****	이영배	2004-11-29	100,000	인천70라9685	20040723	20040916	인천 중구 항동7가 91번지2호4/1 연안아파트 1동 102호
43	002694-00	670302-1*****	고종섭	2004-11-29	140,000	인천32더9677	20040712	20040917	서울 송파구 오륜동 올림픽선수촌2단지아파트238동507호
44	002695-00	670622-1*****	윤성연	2004-11-29	110,000	인천31고8027	20040719	20040917	인천 중구 내동 7번지15호1/5
45	002696-00	551008-1*****	이성화	2004-11-29	20,000	인천80고3189	20040819	20040917	인천 중구 항동7가 85번지24호1/4
46	002697-00	751225-1*****	박윤민	2004-11-29	20,000	인천73다3928	20040908	20040917	인천 중구 운서동 2708번지8호 풍림아이원6-2단지@ 622/101
47	002699-00	120111-0*****	태을산업(주)	2004-11-29	20,000	인천70나1729	20040906	20040917	인천 중구 항동7가 58번지61호
48	002701-00	120111-0*****	청진특수 화물(주)	2004-11-29	20,000	인천98아2913	20040916	20040917	인천 중구 신흥동3가 18번지3 호B216호

연 번	부과 번호	주민등록 번호	납부자 성명	부과 일자	부과 금액	부과 대상	유효기간 만료일자	검사 일자	주 소
49	002704-00	120111-0*****	동서 통운(주)	2004-11-29	20,000	인천80 자4605	2004 0916	2004 0918	인천 중구 항동7가 58번지4호 라이프상가2동308호
50	002706-00	120111-0*****	(주)유구 물류	2004-11-29	20,000	인천98 자4604	2004 0830	2004 0920	인천 중구 항동7가 27번지194호 상의빌딩2층
51	002707-00	700403-1*****	장영명	2004-11-29	20,000	인천80 러9645	2004 0918	2004 0920	인천 중구 운서동 2743-1 풍림아이원5-1-1단지@502/308
52	002708-00	500525-2*****	김영숙	2004-11-29	40,000	25 다2098	2004 0813	2004 0920	인천 중구 송학동2가 8번지 203호 16통 4반
53	002711-00	120111-0*****	(주)인송	2004-11-29	20,000	인천80 바3063	2004 0920	2004 0921	인천 중구 신흥동3가 32번지15호
54	002712-00	120111-0*****	(주)원천 상사	2004-11-29	20,000	인천81 라5712	2004 0920	2004 0921	인천 중구 도원동 25번지11호
55	002713-00	560626-1*****	정종권	2004-11-29	20,000	인천30 더5502	2004 0830	2004 0921	인천 중구 신생동 38번지5호25/4 삼성아파트 101동 1703호
56	002715-00	761209-1*****	한재호	2004-11-29	20,000	인천81 마4639	2004 0920	2004 0921	인천 중구 항동7가 91번지2호5/5 연안아파트 6동 201호
57	002717-00	730220-1*****	김태성	2004-11-29	240,000	인천7 로2518	2004 0616	2004 0922	인천 중구 중산동 952번지6통3반
58	002719-00	571129-1*****	이현상	2004-11-29	20,000	인천78 가2861	2004 0918	2004 0922	인천 중구 율목동 245번지16호11/4 새한그린빌라 5/101
59	002720-00	591205-1*****	한경현	2004-11-29	120,000	인천3 나8428	2004 0722	2004 0922	인천 중구 내동 5번지10호1/6
60	002721-00	630106-1*****	장정두	2004-11-29	80,000	인천31 구7646	2004 0802	2004 0922	인천 중구 운서동 1200번지21/ 2
61	002722-00	110111-0*****	(주)한진	2004-11-29	30,000	인천80 바5943	2004 0820	2004 0923	인천 중구 항동7가 34번지 1호
62	002723-00	120111-0*****	(주)고려 환경	2004-11-29	20,000	인천7 러3839	2004 0907	2004 0923	인천 중구 유동 4번지7호
63	002724-00	124611-0*****	(주)에스 케이	2004-11-29	20,000	인천86 아8903	2004 0910	2004 0923	인천 중구 신흥동1가 34번지25호
64	002725-00	630706-1*****	백종근	2004-11-29	300,000	86 라3726	2004 0423	2004 0923	인천 중구 항동7가 27번지107호22/1 비취맨손 7동 502호
65	002726-00	120111-0*****	서해안 종합물류	2004-11-29	20,000	인천86 자6632	2004 0920	2004 0924	인천 중구 항동7가 27번지48호
66	002727-00	450311-1*****	홍진표	2004-11-29	20,000	인천2 거4413	2004 0923	2004 0924	인천 중구 항동7가 27번지107호 비취맨손 13-105 26/2
67	002728-00	700518-1*****	유광진	2004-11-29	20,000	인천31 고9342	2004 0906	2004 0924	인천 중구 도원동 70번지14호 삼흥탑스빌라 B01
68	002730-00	680827-1*****	장국용	2004-11-29	300,000	인천80 너4375	2004 0531	2004 0930	인천 중구 율목동 90번지9호7/2 반석3차빌라 101호
69	002732-00	620327-1*****	박재욱	2004-11-29	150,000	인천34 러4284	2004 0720	2004 0930	인천 중구 도원동 18번지10호2/2 진영빌라 다동 401호
70	002733-00	660401-1*****	차지원	2004-11-29	20,000	인천31 고8764	2004 0830	2004 0930	인천 중구 신흥동1가 34번지2호37/4 신흥동대림아파트 102동 1102호
71	002736-00	500125-2*****	허경애	2004-11-29	20,000	인천82 다3342	2004 0415	2004 0609	인천 중구 화평동 334 15/11
72	002737-00	760324-1*****	하진호	2004-11-29	20,000	인천82 다3342	2004 0610	2004 0729	인천 중구 신흥동2가 54-7 삼익@2/202
73	002738-00	760324-1*****	하진호	2004-11-29	20,000	인천80 나9962	2004 0619	2004 0729	인천 중구 신흥동2가 54-7 삼익@2/202

인천광역시중구공고 제2005-604호

인천광역시중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입법예고 공고

인천광역시중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의 내용을 인천광역시중구 법제사무처리규칙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2월 17일

인천광역시중구청장

1. 조례명 : 인천광역시중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
2. 취 지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 및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규정에 의하여 우리 구비를 재원으로 하여 관할 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3. 주요내용
 - 중구 교육경비 보조기준액 범위를 규정함(안 제2조)
 - 중구 교육경비 보조사업 범위 및 순위기준을 규정함(안 제3조, 4조)
 - 중구 교육경비 보조금신청 및 교부결정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6조)
 - 중구 교육경비보조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8,9,10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3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중구청장(참조 : 문화공보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화공보실 교육청소년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의견제출 및 전화번호

 - ▲ 주소 : (우400-701)인천광역시 중구 관동1가 9번지
인천광역시중구청 문화공보실 교육청소년팀
 - ▲ 전화 : 760-7142(fax 760-7129)
5. 공청회 개최계획 : 없음

인천광역시중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05. .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중구청장

□ 제 안 이 유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 및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규정에 의하여 우리구비를 재원으로 하여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주 요 골 자

- 중구 교육경비 보조기준액 범위 규정함(안 제2조).
- 중구 교육경비 보조사업 범위 및 순위기준을 규정함(안 제3조, 4조).
- 중구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 및 교부결정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6조).
- 중구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 8, 9, 10조).

□ 참 고 내 용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
-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규정 (교육인적자원부)

인천광역시중구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중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 및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중구(이하 “구”라 한다)구비를 재원으로 하여 구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기준액의 제한) 구청장은 당해연도 일반회계의 자치구세수입과 세외수입을 합한 예산액의 1퍼센트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조(보조사업의 범위) 구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급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
3.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6.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제4조(보조금교부의 순위 등)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교부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1. 운동장이나 체육시설 등을 지역주민을 위하여 개방하는 학교
2. 지역주민에게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거나 정보화 교육장소 등으로 제공하는 학교
3.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의 수혜실적이 없는 학교

② 구청장은 보조사업이 특정학교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보조의 신청 등) ① 구청장은 당해연도 보조사업에 대하여 각급학교의 장에게 보조대상사업과 예산액을 통지하고 각급학교장이 보조금 교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사업비 및 자체부담사업비
4. 보조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사업완료 예정일
5.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세부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부받고자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5.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보조금의 교부결정) 구청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교부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검토하여 그 보조여부를 결정한 후 교부결정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교부 목적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산정의 착오여부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각급학교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중구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당해연도 교육경비 보조대상사업 선정
2. 교육경비 보조신청사업 심의
3. 보조사업의 적정성 여부
4.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5. 기타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1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다만, 구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의 과반수이하이어야 한다.

1. 구 공무원
2. 인천광역시중구의회장이 추천하는 자
3. 인천광역시 교육공무원
4. 기타 학교교육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부서의 실·과장이 된다.

제9조(위원장의 임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예산 집행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보조금을 교부받는 자에 대한 제재) 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조건에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3. 보조금 교부의 사업목적이 공공에 이바지하지 않을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
5.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각급학교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사항은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및 인천광역시중구 보조금관리조례가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중구 제2005-606호

신포시장 환경개선공사 공시송달 공고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동 3, 9번지 일원의 공익사업인 『신포시장 환경개선공사사업』에 편입된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6조(협의)규정에 의거 보상협의코자 하였으나, 소유자의 주소·거소 불명으로 협의를 할 수 없으므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협의기간내에 보상 협의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2월 18일

인 천 광 역 시 중 구 청 장

- 아 래 -

1. 사 업 명 : 신포시장 환경개선공사
2.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중구청장
3. 보상협의 및 계약기간 : 2005. 2. 19 ~ 2005. 3. 5
4. 협의 및 계약체결장소 : 인천광역시 중구청 산업경제과(☎760-7364)
5. 보상방법 및 절차
 - 보상금산정 : 2개 감정평가기관 평가액의 산술평균
 - 보상금지급 : 계약체결 후 소유권이전 등 소정의 절차 후 즉시 계좌입금
6.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 “별첨”참조
7. 보상대상 내역 : “별첨”참조

<별첨>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토지 소유자 및 토지,건물 동시 소유자의 경우

구비서류	통수	세 부 사 항
1. 인감증명서		※ 전국 시·군·구 및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 가능
①부동산매도용	1통	※ 부동산 매도용 발급시 반드시 기재 - 매수자 성명 : “인천광역시 중구청” - 매수자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관동1가 9”
②일반용	1통	
2. 주민등록초본	1통	※ 주소변동 사항 전부 기재된 것
3. 인감도장		※ 개인의 경우는 개인 인감도장 ※ 법인의 경우는 법인 인감도장
4. 은행통장	사본 1부	※ 보상금 수령용 계좌 ※ 반드시 토지소유자 통장이어야 함

 건물 소유자의 경우

구비서류	통수	세 부 사 항
1. 주민등록초본	1통	※ 주소변동 사항 전부기재된 것
2. 인감도장	1부	
3. 인감증명서(일반용)	1통	※ 전국 시·군·구 및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 가능
4. 은행통장	사본 1부	※ 보상금 수령용 계좌 ※ 반드시 건물소유자 통장이어야 함

※ 기타 공통 참고사항

-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2통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가족관계 증빙서류, 대리인 주민등록증
- 가압류, 근저당권 등 각종 담보물건이 설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해제 후 발급 제출

보상대상 내역

【토지】

연번	소재지			면적(m ²)			보상금액 (원)	소유자			이해관계			비고
	동명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잔여		성명	소유지분 (m ²)	주소	구분	성명	주소	
4	신포동	9-7 9-8 9-11 9-12 9-13 9-14 9-15	대	328.5	328.5		297,660	허부자	54390분의42.9	국외이주(출국) (1982.8.23 미국 출국) :서울·마포구 합정동 372-23 등기부상주소 : 미국뉴욕 11354 프러싱41번가153-21				
							13,115,760	정상희	259분의9	최중주민등록주소: (1995.3.10사망말소) 인천·남구 관교동 13-10삼환@202-1410	상속권자	최창분	인천·남구 관교동 13-10(3/4)삼환@ 202-1410	
											"	정종호	"	
											"	정종권	인천·중구 신생동 38-5(25/4)삼성@ 101-1703	
											"	정순옥	인천·부평구 삼산동 456-8(37/3)주공삼산 타운@ 402-202	
											"	정순이	경기도 광명시 철산3동 241주공@ 1319-503	
							32,060,830	한희수	259분의22	인천·중구 신포동 9(7/4)	근저당권	농업협동조합 중향회	서울·중구 충정로1가 75 신포지점:인천·중구 사 동3-1경신빌딩	
											근저당권	최병선	주민등록상 주소 : 인천·남구 주안2동 718-2 성락@ A-501 등기부상 주소 : 인천·남구도화동456	
											"	(합)영진 상호 신용 금고	경기도부천시 심곡동 176-13	
							"	"	(주)정우 상호 신용 금고	현주소 : 인천·남구주 안동 920-8인천금고 빌딩5층 등기부상 주소: 인천·중구신포동1				

【물건】

연번	소재지		물건의 종류	구조 및규격	면적(m ²)		보상금액 (원)	소유자			이해관계			비고
	동명	지번			연면적	편입면적		성명	소유지분 (m ²)	주소	구분	성명	주소	
1	신포동	5-17	점포	목재 스래트	12.6	12.6	1,197,000	김은임 김용인	-	최중주민등록주소: (1993.8.4사망말소) 인천·남구 용현5동 627-79 대림@2-405 등기부상 주소: 인천·시중구신포동 3 인천·중구 신흥동1가91	상속권자	조명휘	인천·남구 용현5동 627-79대림@2-405	
											"	조명원	인천·중구신흥동1가 91-35	
											"	조명건	서울·관악구 봉천제9 동 1718 벽산블루밍@ 204-402	
											"	조명덕	인천·남동구 만수6동 1018대동@ 101-904	

인천광역시중구공고 제 2005-607호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체납자 자동차 압류예고 공고

압류예고대상 : 86라6331외 95대

주 소 : 인천 중구 신흥동 3가7번지308호외 95개소

압류예고기간 : 2005.2.18 ~ 2005.3.5

압류예고의 내역 : 별 첨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하여 부과한 과태료가 현재까지 납부하지 하여 자동차관리법 제84조(과태료)제6항 및 지방세법 제28조(체납처분)·국세징수법 제41조(채권의압류절차)의 규정에 따라 채권(자동차)을 압류 할 예정이오니, 압류예고 기간내에 체납액 전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채권(자동차) 압류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의처 : 인천광역시중구교통행정과 (☎ 032-760-7677)

2005년 2월 18일

인 천 광 역 시 중 구 청 장

인천광역시중구공고 제2005-607호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체납자 자동차 압류예고 공고

연번	부과번호	주민등록번호	납부자성명	물건명	부과일자	부과금액	검사유효기간	검사일자	주소
1	002741-00	170111-0*****	(주)대동수산	86라6331	2004-12-02	90,000	2004-08-10	2004-10-01	인천 중구 신흥동3가 7번지308호 정광씨캘리스오피스텔 에이 1004
2	002742-00	610328-2*****	성희숙	인천30더6816	2004-12-02	20,000	2004-09-30	2004-10-01	인천 중구 도원동 41번지25호13/2 뉴-월드아파트 509호
3	002743-00	730618-1*****	김경덕	인천70라1741	2004-12-02	20,000	2004-09-30	2004-10-01	인천 중구 신흥동1가 34-2 37/4 신흥동대림@ 102동 702호
4	002744-00	630402-1*****	박호동	인천32나3733	2004-12-02	20,000	2004-09-02	2004-10-02	인천 중구 운서동 2796번지4호50/2 화평에어빌 412호
5	002747-00	680113-1*****	유종욱	인천33러7477	2004-12-02	60,000	2004-08-19	2004-10-02	인천 중구 신흥동1가 80번지8/3
6	002750-00	124611-0*****	(주)우성상운	인천86자5107	2004-12-02	180,000	2004-07-16	2004-10-04	인천 중구 신흥동3가 34번지
7	002752-00	600612-2*****	공대순	인천86바8972	2004-12-02	20,000	2004-09-30	2004-10-04	인천 중구 운남동 1047번지 11통 2반
8	002755-00	110111-0*****	(주)한진	인천80바5580	2004-12-02	20,000	2004-09-20	2004-10-04	인천 중구 향동7가 34번지 1호
9	002756-00	670511-1*****	송국현	73노2132	2004-12-02	140,000	2004-07-28	2004-10-04	인천 중구 향동7가 60번지3/4 215호
10	002757-00	120111-0*****	삼부운수(주)	인천80사9640	2004-12-02	20,000	2004-09-04	2004-10-04	인천 중구 신흥동3가 29번지8호
11	002758-00	760101-1*****	김통제	인천31누6539	2004-12-02	20,000	2004-09-16	2004-10-04	인천 중구 송월동1가 12번지16호11/1 신성하이빌 2동 101호
12	002759-00	120111-0*****	(주)선방	인천80자4432	2004-12-02	20,000	2004-10-04	2004-10-05	인천 중구 신흥동3가 47번지1호 만남의광장 102호
13	002761-00	120111-0*****	서해안종합물류	인천86자6608	2004-12-02	150,000	2004-07-26	2004-10-05	인천 중구 향동7가 27번지48호
14	002762-00	110111-0*****	(주)한진	인천80바5806	2004-12-02	20,000	2004-09-08	2004-10-05	인천 중구 향동7가 34번지 1호
15	002763-00	580414-1*****	설연환	인천1로6735	2004-12-02	20,000	2004-10-04	2004-10-05	인천 중구 전동 14번지10호18/3 전동빌리지 104동 102호
16	002764-00	540807-1*****	강상구	인천32라1344	2004-12-02	90,000	2004-08-12	2004-10-05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군하리 38번지 12호
17	002767-00	560103-2*****	김성자	인천30마9377	2004-12-02	300,000	2004-06-04	2004-10-07	인천 중구 무의동 971번지12/1
18	002768-00	641225-2*****	정성희	인천33더2560	2004-12-02	300,000	2004-05-25	2004-10-07	인천 중구 사동 17번지6호1/4 201호
19	002769-00	600101-1*****	홍성규	인천8너1192	2004-12-02	300,000	2004-06-07	2004-10-07	인천 중구 운북동 993번지4호 27통3반
20	002773-00	740713-1*****	박경근	인천31누3470	2004-12-02	300,000	2004-06-07	2004-10-08	인천 중구 신생동 33번지14호6/2 동민빌라트 701/404
21	002776-00	610612-1*****	정찬일	인천70라1582	2004-12-02	20,000	2004-10-01	2004-10-08	인천 중구 운서동 2850번지22/5 엘지인천공항에클라트 218호
22	002777-00	120111-0*****	삼영물류(주)	인천86자1760	2004-12-02	300,000	2004-05-31	2004-10-08	인천 중구 신흥동3가 7번지241호 정석빌딩 신관 8층

연번	부과 번호	주민등록 번호	납부자 성명	물건명	부과 일자	부과금액	검사 유효기간	검사 일자	주 소
23	002780-00	640624-1*****	문태중	25가8490	2004-12-02	20,000	2004-09-30	2004-10-09	인천 중구 운서동 2745-2 42/1 풍림아이원3-1-1단지@101/406
24	002782-00	670215-2*****	신미라 외1인	인천70 마1453	2004-12-02	120,000	2004-08-10	2004-10-11	인천 중구 향동7가 91번지2호6/2 연안아파트 7동 310호
25	002783-00	120111-0*****	동호 물류(주)	인천86 자6518	2004-12-02	80,000	2004-08-23	2004-10-11	인천 중구 향동7가 91번지5호
26	002784-00	630910-1*****	황교영	인천70 마3011	2004-12-02	20,000	2004-09-20	2004-10-11	인천 중구 덕교동 산77번지6호7/2
27	002785-00	481002-1*****	엄명권	인천70 다5632	2004-12-02	20,000	2004-10-06	2004-10-11	인천 중구 운서동 1583번지3호17/2 서강스카이빌 B동 101호
28	002787-00	110111-0*****	(주)한진	인천80 바6010	2004-12-02	20,000	2004-09-25	2004-10-12	인천 중구 향동7가 34번지 1호
29	002789-00	120111-0*****	문성 통운(주)	인천80 사1844	2004-12-02	20,000	2004-10-05	2004-10-12	인천 중구 향동7가 65번지3호
30	002790-00	730915-1*****	황상구	인천70 라2245	2004-12-02	20,000	2004-10-08	2004-10-12	인천 중구 운서동 2786번지 1호 영종주공스카빌@ 1203동 405호
31	002792-00	741205-1*****	김태형	인천31 구4897	2004-12-02	20,000	2004-09-30	2004-10-12	인천 중구 신흥동2가 54번지5호13/4 삼익아파트 1/117
32	002793-00	420201-1*****	조병식	인천70 마2960	2004-12-02	20,000	2004-09-16	2004-10-13	인천 중구 운서동 1678번지2호18/3
33	002794-00	700316-2*****	박현주	25가8205	2004-12-02	20,000	2004-10-11	2004-10-13	인천 중구 향동7가 27번지107호26/3 비취맨손 14동 602호
34	002795-00	120111-0*****	(주)코리아 인천종합물류	인천86 자6580	2004-12-02	200,000	2004-07-19	2004-10-13	인천 중구 신흥동3가 29번지 8호
35	002796-00	630817-1*****	임중희	90가2061	2004-12-02	20,000	2004-09-13	2004-10-13	인천 중구 운서동 1580번지2호17/2
36	002797-00	110111-0*****	(주)한진	인천80 바5505	2004-12-02	20,000	2004-10-07	2004-10-14	인천 중구 향동7가 34번지 1호
37	002798-00	810502-2*****	김성미	인천30 머3221	2004-12-02	20,000	2004-09-20	2004-10-14	인천 중구 중산동 1385번지4/2
38	002799-00	610515-1*****	서정만	인천70 나7047	2004-12-02	200,000	2004-07-19	2004-10-14	인천 중구 송월동3가 11번지7호
39	002800-00	360320-1*****	박상복	인천82 가4824	2004-12-02	20,000	2004-09-23	2004-10-14	인천 중구 신흥동2가 54번지5호13/3 삼익아파트 1동 617호
40	002801-00	110111-0*****	(주)한진	인천86 아3612	2004-12-02	20,000	2004-09-20	2004-10-14	인천 중구 향동7가 34번지 1호
41	002802-00	650715-1*****	정성원	인천30 더2864	2004-12-02	20,000	2004-09-13	2004-10-15	인천 중구 송월동1가 10번지1호 송월아파트 1-101
42	002803-00	470430-1*****	최육만	인천83 가8978	2004-12-02	200,000	2004-07-21	2004-10-15	인천 중구 덕교동 218번지8/1
43	002804-00	120111-0*****	금성 통상(주)	인천80 더5317	2004-12-02	80,000	2004-08-26	2004-10-15	인천 중구 중앙동1가 2,5
44	002805-00	601007-2*****	김정금	인천30 너4217	2004-12-02	300,000	2004-06-14	2004-10-15	인천 중구 도원동 24번지69호8/3
45	002808-00	120111-0*****	(주)삼성 운수	인천98 바2909	2004-12-02	20,000	2004-09-17	2004-10-15	인천 중구 향동7가 27번지3호
46	002809-00	661203-1*****	강지웅	인천70 나8709	2004-12-02	20,000	2004-09-20	2004-10-15	인천 중구 북성동2가 12번지256호6/6 우리빌라 A동 B01호
47	002810-00	110111-1*****	코세로 지스틱스	인천86 자3558	2004-12-02	20,000	2004-10-14	2004-10-15	인천 중구 신흥동3가 18번지3호

연번	부과 번호	주민등록 번호	납부자 성명	물건명	부과 일자	부과금액	검사 유효기간	검사 일자	주소
48	002811-00	380113-1*****	고종현	86 라6710	2004-12-02	20,000	2004 1004	2004 1016	인천 중구 신흥동2가 54번지7호14/6 삼익아파트 2동 1108호
49	002813-00	460413-2*****	강옥순. 민형진	인천32 라5993	2004-12-02	200,000	2004 0722	2004 1016	인천 중구 유동 2번지70호1/2
50	002815-00	710625-1*****	홍기삼	인천72 나6849	2004-12-02	20,000	2004 1004	2004 1018	인천 중구 신흥동3가 53번지4호 향운아파트 8-203
51	002817-00	420411-1*****	이정순	인천80 다6865	2004-12-02	20,000	2004 1016	2004 1018	인천 중구 무의동 541번지9/2
52	002819-00	680929-1*****	김종원	인천80 더6486	2004-12-02	20,000	2004 0921	2004 1018	인천 중구 향동7가 27번지107호22/2 비취맨션 7동 503호
53	002820-00	460319-1*****	장용득	86 주1342	2004-12-02	120,000	2004 0817	2004 1018	인천 중구 중산동 710번지2호6/2
54	002822-00	120111-0*****	(주)한길 운수	인천80 아1822	2004-12-02	20,000	2004 1016	2004 1018	인천 중구 신흥동3가 18번지3호B-204
55	002824-00	120111-0*****	(주)용천 특수	인천80 자5304	2004-12-02	40,000	2004 0910	2004 1019	인천 중구 향동7가 58번지79호 현대빌딩 404호
56	002827-00	120111-0*****	서해안 종합물류	인천86 자6666	2004-12-02	300,000	2004 0621	2004 1019	인천 중구 향동7가 27번지48호
57	002829-00	581228-1*****	유덕선	인천30 다3754	2004-12-02	240,000	2004 0715	2004 1020	인천 중구 향동7가 91번지2호 연안아파트 9동104호
58	002830-00	641109-2*****	이현숙	인천73 노3412	2004-12-02	20,000	2004 0930	2004 1020	인천 중구 전동 25번지323호19/1 현대빌라 마동 301호
59	002831-00	120113-0*****	동화 특수화물	인천80 아3516	2004-12-02	20,000	2004 1008	2004 1020	인천 중구 신흥동3가 53번지9호 연안빌딩 202
60	002832-00	110111-0*****	(주)한진	인천80 바5991	2004-12-02	20,000	2004 1009	2004 1020	인천 중구 향동7가 34번지 1호
61	002834-00	600808-1*****	최영국	인천2 겨5598	2004-12-02	40,000	2004 0911	2004 1020	인천 중구 운북동 산22번지2호26/5
62	002837-00	410228-1*****	안호복	인천80 가1612	2004-12-02	290,000	2004 0630	2004 1021	인천 중구 신흥동1가 91번지124호9/2
63	002838-00	120111-0*****	(주)원동 기업	인천80 바3093	2004-12-02	300,000	2004 0617	2004 1021	인천 중구 신흥동3가 32번지15호
64	002839-00	551023-2*****	이영자	인천3 도6310	2004-12-02	20,000	2004 0930	2004 1022	인천 중구 북성동1가 98번지491호15/4
65	002841-00	600809-2*****	이성애	인천35 라9820	2004-12-02	20,000	2004 1005	2004 1022	서울 성북구 길음동 496-29 12/4
66	002842-00	120111-0*****	(주)천광 물류	인천98 자2908	2004-12-02	20,000	2004 0924	2004 1022	인천 중구 신흥동3가 41번지
67	002843-00	120111-0*****	서해안 종합물류	인천86 자6640	2004-12-02	20,000	2004 1015	2004 1023	인천 중구 향동7가 27번지48호
68	002844-00	770515-1*****	송봉국	인천30 구2257	2004-12-02	20,000	2004 1008	2004 1023	인천 중구 무의동 161번지5호10/1
69	002846-00	550105-1*****	김종태	45 가5644	2004-12-02	20,000	2004 1014	2004 1023	인천 중구 신흥동1가 12번지20호1/1
70	002847-00	120111-0*****	(주)하나 통상	인천86 아2801	2004-12-02	20,000	2004 1016	2004 1023	인천 중구 향동7가 58번지6호
71	002849-00	700301-2*****	김영희	인천35 마9389	2004-12-02	30,000	2004 0920	2004 1025	인천 중구 운서동 2708-8 풍림아이원6-2단지@628/203
72	002850-00	680924-1*****	조창호	인천80 너4593	2004-12-02	160,000	2004 0811	2004 1025	인천 중구 전동 17번지25호17/ 5

연번	부과 번호	주민등록 번호	납부자 성명	물건명	부과 일자	부과금액	검사 유효기간	검사 일자	주 소
73	002854-00	690417-1*****	김중국	인천80 머1306	2004-12-02	20,000	2004 1008	2004 1025	인천 중구 향동7가 27-107 10/5 비취맨션 2/1010
74	002855-00	730511-2*****	문현숙	인천32 더7209	2004-12-02	20,000	2004 1014	2004 1025	인천 중구 인현동 27번지24호15/2
75	002861-00	720226-1*****	황병태	인천32 고6017	2004-12-02	20,000	2004 0930	2004 1026	인천 중구 향동7가 27번지107호9/2 비취맨션 1동 408호
76	002862-00	120111-0*****	우런옥운 (합자)	인천80 사5830	2004-12-02	20,000	2004 1014	2004 1026	인천 중구 신생동 2번지50호
77	002863-00	360822-2*****	박옥주	인천7 도6518	2004-12-02	300,000	2004 0628	2004 1026	인천 중구 중산동 1066번지3/6
78	002864-00	520820-1*****	민홍선	인천31 모8103	2004-12-02	20,000	2004 0924	2004 1026	인천 중구 을왕동 667번지7호7/1
79	002865-00	780506-2*****	이경옥	인천32 겨9925	2004-12-02	20,000	2004 1018	2004 1026	인천 중구 신흥동2가 1-82 31/1 삼정베스트빌 2동 202호
80	002866-00	760407-2*****	이혜영	인천30 노5941	2004-12-02	20,000	2004 1009	2004 1026	인천 중구 도원동 21번지43호4/1 성도빌라 102호
81	002868-00	120111-0*****	(주)삼원 기업	인천98 아3903	2004-12-02	20,000	2004 1014	2004 1026	인천 중구 향동7가 58번지4호 라이프상가 2동221호
82	002872-00	710802-1*****	최경수	인천7 로3586	2004-12-02	20,000	2004 1025	2004 1027	인천 중구 북성동1가 7번지9호2/2
83	002873-00	680813-2*****	김명희	인천80 고7126	2004-12-02	20,000	2004 1012	2004 1027	인천 중구 운서동 2785번지11호52/2 삼안연립주택 109동 103호
84	002874-00	640408-1*****	박창용	인천81 다7619	2004-12-02	20,000	2004 1002	2004 1027	인천 중구 운서동 2744번지1호41/3 풍림마트 101호
85	002875-00	180111-0*****	셋방 기업(주)	인천80 사3785	2004-12-02	20,000	2004 1018	2004 1027	인천 중구 신흥동3가 7번지308호
86	002879-00	590521-1*****	송연식	인천82 다3186	2004-12-02	50,000	2004 0916	2004 1028	인천 중구 운서동 617번지16통1반
87	002881-00	691105-1*****	양찬희	인천34 너3783	2004-12-02	40,000	2004 0921	2004 1029	인천 중구 신흥동2가 22번지31호5/4 성신빌라 B동 201호
88	002883-00	591020-1*****	추성남	인천7 고5954	2004-12-02	170,000	2004 0814	2004 1029	인천 중구 운남동 754번지8통4반
89	002885-00	110111-1*****	티네트(주)	인천80 라6231	2004-12-02	20,000	2004 0930	2004 1030	인천 중구 선린동 33번지
90	002886-00	120111-0*****	동화특수 화물(합)	인천80 아3518	2004-12-02	20,000	2004 1015	2004 1030	인천 중구 신흥동3가 53번지9호 연안빌딩 202
91	002887-00	821219-1*****	박상준	인천31 더6205	2004-12-02	120,000	2004 0830	2004 1030	인천 중구 운남동 418번지3호8/ 3
92	002888-00	690206-1*****	여경주	인천80 러8062	2004-12-02	20,000	2004 0930	2004 1030	인천 중구 전동 14번지 8호 전동빌리지 102동 302호 17통 3반
93	002889-00	550326-2*****	최미연	인천80 겨9258	2004-12-02	70,000	2004 0611	2004 0827	인천 중구 송월동2가 4번지 18통 1반
94	002890-00	120111-0*****	서해안 종합물류	인천80 아7014	2004-12-02	20,000	2004 0626	2004 0816	인천 중구 향동7가 27번지 48호
95	002891-00	520728-1*****	오현중	인천7 로3524	2004-12-02	20,000	2004 0722	2004 0902	인천 중구 향동1가 2번지 7호 24통2반
96	002892-00	680305-2*****	허정옥	인천31 다3415	2004-12-02	20,000	2004 0717	2004 0902	인천 중구 답동 번지 1호 로알답동맨션 102동505호 15통4반